

# 성덕대학교 자체평가 보고서

2019년 2월 4일

성덕대학교

# 목 차

|                          |     |
|--------------------------|-----|
| 제 I 장 서론 .....           | 1   |
| 제 II 장 기준별 평가결과 .....    | 7   |
| 1. 대학의 사명과 책무 .....      | 8   |
| 2. 교육과정 .....            | 30  |
|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지원 .....  | 47  |
|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     | 71  |
| 5. 학생 .....              | 84  |
| 6. 교직원 .....             | 101 |
| 7. 재정 및 시설 .....         | 119 |
| 제 III 장 자체평가 활용 계획 ..... | 143 |

# 제 I 장. 서론

# 제 I 장 서 론

## 1. 자체평가의 목적

### □ 자체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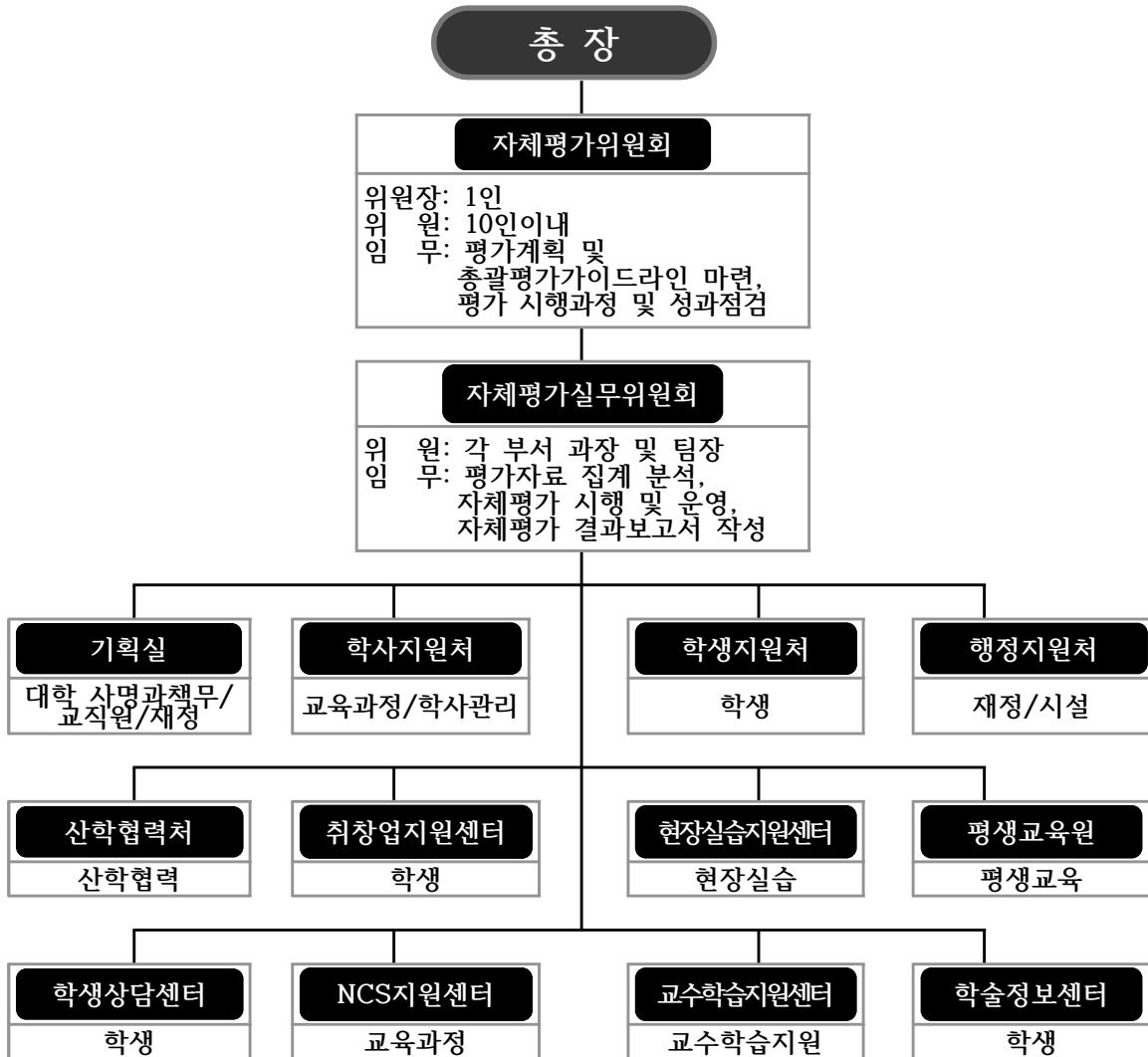
-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역량 진단을 통해 강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대학의 교육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기검증을 거쳐 대학교육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통해 대학이 갖추고 있는 교육품질이 최소기준과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또한 대학이 이를 충분히 실현하고 자체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
- 대학의 교육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점검을 통해 대학발전계획과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대학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자와 배분의 효과성을 부여
- 대학비전, 교육목표, 교육운영 실태와 결과 및 객관적 자기진단평가지표의 모형을 통하여 대학의 현 위치와 문제점, 대학발전과 운영지표를 구체화하고 교육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
- 교육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 대해 대학의 설립목적, 교육목표,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에 기반한 자기점검과 진단, 평가를 통해 자율적 교육품질관리, 대학발전계획 수립 등 대학발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음. 이를 위해 대학 전 구성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대학의 현 운영실태를 진단,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 산업체)들에게 공시하고, 지속적인 교육품질을 개선(CQI)하고자 함

### □ 자체평가의 특징

- 자체평가는 통해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점검하고, 그 사명과 목표를 성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해보는 과정이었음. 또한 자체평가를 통해 대학의 구성원들과 함께 대학의 우수 부분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향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기도 하였음
- 따라서 대학은 기관평가를 대비한 자체평가를 수행하면서 대학의 건학이념인 “道德精神, 智仁勇兼, 學行一致”을 위한 총체적 역량에 대한 자기검증의 기회가 되었음

## 2. 자체평가의 추진체계

- 대학자체평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실을 담당부서로 함. 자체평가는 기획·총괄하는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의 실무·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위원회 및 사업수행단위부서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그 조직체계는 그림과 같음



[그림] 자체평가 조직체계

□ 자체평가의 내용

○ 평가인증기준 구성 체계 9개의 기준의 27개의 평가요소로 구성

<표> 자체평가 기준

| 기준                       | 세부기준              | 평가요소                       |               |
|--------------------------|-------------------|----------------------------|---------------|
| 기준1<br>대학의 사명과 책무        | 1.1 대학의 사명 및 발전계획 | 1.1.1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        |               |
|                          |                   | 1.2.1 대학발전계획               |               |
|                          | 1.2 대학운영          | 1.2.1 대학의 조직 및 운영          |               |
|                          |                   | 1.2.2 의사결정구조               |               |
|                          | 1.3 대학의 책무 및 교육성과 | 1.3.1 대학의 책무               |               |
|                          |                   | 1.3.2 교육품질 개선              |               |
|                          |                   | 1.3.3 교육만족도                |               |
|                          | 기준2<br>교육과정       | 2.1 교육과정의 질 보장             | 2.1.1 교육과정 정책 |
|                          |                   |                            | 2.1.2 교육과정 개발 |
| 2.2 전공 및 교양 교육           |                   | 2.2.1 현장중심 전공교육            |               |
|                          |                   | 2.2.2 직업기초<br>기초학습 및 교양 교육 |               |
|                          |                   | 2.2.3 실험실습교육 지원            |               |
|                          |                   |                            |               |
| 기준3<br>학사관리 및<br>교수학습 지원 | 3.1 학사관리          | 3.1.1 학생선발                 |               |
|                          |                   | 3.1.2 학사관리 규정 및 준수         |               |
|                          |                   | 3.1.3 수업관리                 |               |
|                          |                   | 3.1.4 재학생 충원               |               |
|                          |                   | 3.1.5 학업 성취도 평가            |               |
|                          | 3.2 교수학습 지원       | 3.2.1 교수학습 지원 체제           |               |
|                          |                   | 3.2.2 교수학습 지원활동 평가<br>및 개선 |               |
|                          |                   |                            |               |
|                          |                   |                            |               |
| 기준4<br>산학협력 및<br>평생교육    | 4.1 산학협력          | 4.1.1 산학협력활동               |               |
|                          |                   | 4.1.2 취·창업지원               |               |
|                          |                   | 4.1.3 취업률                  |               |
|                          | 4.2 현장실습          | 4.2.1 현장실습교육 지원            |               |
|                          | 4.3 평생교육          | 4.3.1 평생교육 운영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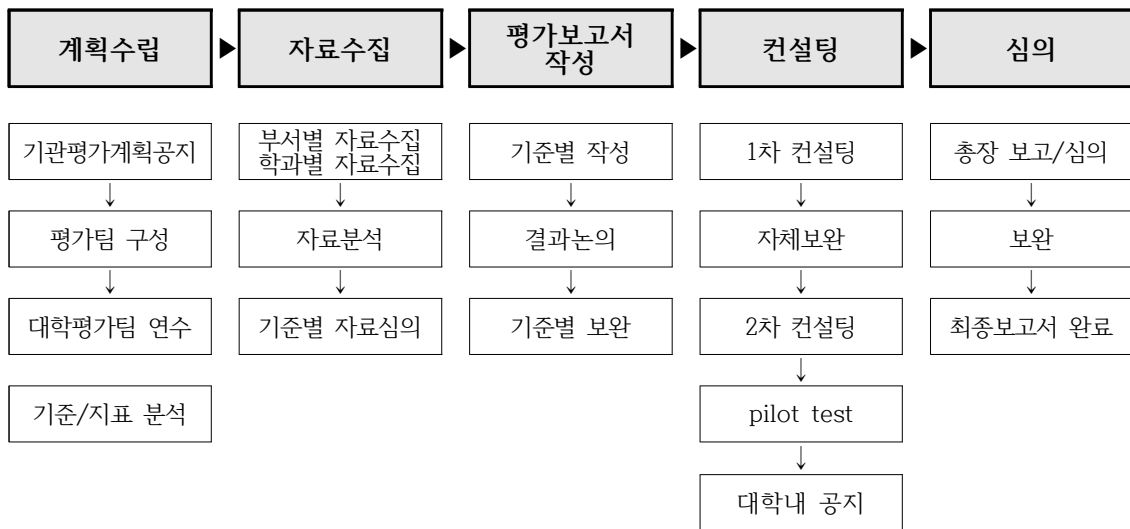
| 기준             | 세부기준                   | 평가요소                    |
|----------------|------------------------|-------------------------|
| 기준5<br>학생      | 5.1 학생지원               | 5.1.1 학생자치활동 및 안전관리     |
|                |                        | 5.1.2 학생상담              |
|                |                        | 5.1.3 도서관 지원            |
|                | 5.2 학생복지               | 5.2.1 복지지원              |
|                |                        | 5.2.2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 지원 |
| 기준6<br>교·직원    | 6.1 교원                 | 6.1.1 전임교원 인사관리         |
|                |                        | 6.1.2 전임교원의 확보          |
|                |                        | 6.1.3 비전임 교원의 적합성       |
|                | 6.2 직원                 | 6.2.1 직원 인사관리           |
|                |                        | 6.2.2 직원 역량 개발          |
|                | 6.3 교·직원 처우 및 복지       | 6.3.1 교·직원 처우 및 복지      |
| 기준7<br>재정 및 시설 | 7.1 재정계획 및 운영          | 7.1.1 연간 예산계획 수립 및 결산   |
|                |                        | 7.1.2 재정자원의 다양성         |
|                | 7.2 재정·회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 7.2.1 교육비의 환원           |
|                |                        | 7.2.2 재정·회계 운영의 적절성     |
|                |                        | 7.2.3 감사제도              |
|                | 7.3 교육시설               | 7.3.1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
|                |                        | 7.3.2 정보전산시스템 지원 및 운영   |
|                |                        | 7.3.3 정보보안 체계           |
|                | 7개                     | 18개                     |

□ 자체평가의 방법

- 대학은 기관평가인증에 필요한 각 평가요소의 인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학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객관적인 교육역량을 바탕으로 입증자료를 수집하였음
- 대학은 기관평가인증을 위해 대학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평가인증 준비 단계부터 최종 보고서가 마무리 될 때까지 대학 전체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인증원에서 제시한 평가인증기준을 따름
  - 정성평가와 정량적 정성평가방법의 적용비율 7:3 구성
  - 필수평가요소는 정량적 정성평가방법 적용

□ 자체평가의 절차

- 대학은 자체평가를 위해 계획수립, 자료수집, 평가보고서 작성, 컨설팅 및 심의, 최종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모든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실시 절차



[그림] 자체평가 실시 절차



제 II 장.  
기준별 평가결과

# 기준 1. 대학의 사명과 책무

평가요소: 1.1.1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

진단항목: 대학은 대학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명을 공표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1.1.1-1,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서<br/>           Ⅲ-1.1.1-2, 대학 홈페이지 탑재자료<br/>           Ⅲ-1.1.1-3, 입시팸플릿(2016)<br/>           Ⅲ-1.1.1-4, 행정업무편람(2017)<br/>           Ⅲ-1.1.1-5, 행정사무실 및 강의실 게재 증빙자료<br/>           Ⅲ-1.1.1-6,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직원 직무교육 자료<br/>           Ⅲ-1.1.1-7, 교육과정 편람(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효를 근본 삼는 도덕교육과 지인용검을 겸비한 전인 교육을 통하여 <b>학행일치</b>의 정신으로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하는 설립목적에 따라 『지덕체를 두루 갖추게 하는 <b>인성교육</b>으로 <b>합리적인 사고와 창조정신</b>을 배양하여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b>필요한 인재</b>를 육성함으로써 인류사회, 국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실 및 강의실, 갤러리,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li> <li>·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입시 팸플릿, 행정업무편람, 교육과정 편람, 각종 교육 시 포함하여 게재하였음</li> </ul> |

평가요소: 1.1.1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

진단항목: 대학은 사명의 제정 또는 개정 시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1.1.1-8, 미래발전위원회 회의록<br/>Ⅲ-1.1.1-9, 대학평의원회 회의록<br/>Ⅲ-1.1.1-10, 이사회 회의록</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미래발전위원회에서는 대학의 설립목적에 따라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대학의 사명을 제정하였음 (2013.07.01.)</li> <li>· 이에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심의하였음(2013.07.12.)</li> <li>· 대학의 사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2013.07.09.) 대학의 사명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하였음 (2013.07.17.)</li> </ul> |

□ 평가요소: 1.1.1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

□ 진단항목: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연계한 구체적인 인재상을 담은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는가?

| 충족여부                   | Y(○), C(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1.1.1-11,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서<br/>           Ⅲ-1.1.1-12, 대학 홈페이지 탑재자료<br/>           Ⅲ-1.1.1-13, 입시팸플릿(2016)<br/>           Ⅲ-1.1.1-14, 행정업무편람(2017)<br/>           Ⅲ-1.1.1-15, 행정사무실 및 강의실 게재 증빙자료<br/>           Ⅲ-1.1.1-16,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직원 직무교육 자료<br/>           Ⅲ-1.1.1-17, 교육과정 편람(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목적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에서는 『도덕정신을 겸비한 교양인, 학행일치에 기반 한 전문기술인, 지인용경을 토대로 한 국제인』을 인재상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고자 『인간 중심의 창의형 전문직업인 양성, 자기주도적인 스마트형 전문직업인 양성,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현장실무형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공유하였음</li> <li>· 대학 구성원들의 목표의식 향상과 상시적인 인식을 위하여 행정사무실, 강의실 등 교내 곳곳에 인재상과 교육목표를 게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항시 확인하고 인식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li> <li>· 행정업무 편람 및 교육과정 편람에 교육목표를 명시하여 대학의 비전과 교육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공유하였음</li> </ul> |

평가요소: 1.1.1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

진단항목: 대학은 교육목표 수립 또는 변경 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평의원회 심의 및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1.1.1-18, 대학평의원회 회의록<br/>Ⅲ-1.1.1-19, 이사회 회의록</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p>· 대학 교육목표 수립 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대학평의원회 심의(2016.01.19.) 및 이사회 의결(2016.02.23.)하여 설정하였음</p> |

□ 평가요소: 1.1.2 대학발전계획

□ 진단항목: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학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1.1.2-1, 2016 대학중장기 · 특성화 발전계획서<br/>           Ⅲ-1.1.2-2, 대내외 환경 분석보고서<br/>           Ⅲ-1.1.2-3,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계획(안)(2015.12)<br/>           Ⅲ-1.1.2-4, 대학구성원 의견수렴 분석결과보고서(2015.12)<br/>           Ⅲ-1.1.2-5,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교직원 워크숍<br/>           Ⅲ-1.1.2-6, 대학평의원회 회의록<br/>           Ⅲ-1.1.2-7,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보고<br/>           Ⅲ-1.1.2-8, 2016 성덕대학교 장 · 단기 재정운영계획서</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성덕대학교 중장기 · 특성화 계획서를 2016.01.20.에 수립하여 대학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하였음</li> <li>· 대학의 대내외 환경 분석(2015.11.30)과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및 워크숍(2016.01.11.)을 통하여 생애전주기적 평생 교육을 통한 사회복지분야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을 정립하였음</li> <li>· 대학의 대내외 역량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하여 전략적 대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3대 전략방향을 도출하였음<br/>『사회복지 특성화 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정립 / 재정 건정성 확보』</li> <li>· 3대 전략 방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능, 학생지원 강화, 산학협력 강화, 경영시스템 개선, 인프라 개선이라는 추진 전략을 통하여 3대 전략방향에 따른 25개 실행과제를 도출하였음</li> <li>· 이에 대학은 비전 - 전략방향 - 추진전략(핵심과제) - 실행과제간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대학발전전략을 추진하였음</li> <li>· 이를 위하여 전략방향 및 실행과제에 따른 재정운영계획을 세우고 2016년, 2017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음</li> </ul> |

평가요소: 1.1.2 대학발전계획

진단항목: 대학발전계획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1.1.2-9, 정관<br/>Ⅲ-1.1.2-10,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br/>Ⅲ-1.1.2-11, 대학평의원회 회의록<br/>Ⅲ-1.1.2-12, 이사회 회의록</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 제20조 8 및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2016.01.19.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였음</li> <li>·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대학 중장기 · 특성화 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심의하였음</li> <li>· 정관 제18조에 의거 이사회의 기능에 따라 대학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대학발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6.02.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중장기 · 특성화 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의결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1.1.2 대학발전계획

□ 진단항목 : 대학발전계획은 외부환경 분석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고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공표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1.1.2-13, 대내외 환경 분석보고서<br/>           Ⅲ-1.1.2-14,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계획(안)<br/>           Ⅲ-1.1.2-15, 대학구성원 의견수렴 분석결과보고서<br/>           Ⅲ-1.1.2-16,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교직원 워크숍<br/>           Ⅲ-1.1.2-17, 대학평의원회 회의<br/>           Ⅲ-1.1.2-18,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보고<br/>           Ⅲ-1.1.2-19, 이사회 회의<br/>           Ⅲ-1.1.2-20, 구성원 공표 자료-대학 홈페이지, 행정사무실 및 강의실, 대학 내 게시판 게시물, 대학알리미</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경권 및 영천지역의 사회 수요 및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복지, 말산업과 관련한 산업수요, 정책, 인력수요, 산업동향을 분석하였음(PEST분석)</li> <li>· 대학발전계획 외부환경을 분석하고자 대내 교육수요를 분석하고 대학의 역량과 외부환경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되는 요소를 분석하여 대내외 환경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였음(2015.11.30.)</li> <li>· 2015.12.14.~12.24 교직원, 학생, 협력 산업체를 대상으로 대학발전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교직원: 60명 / 학생: 485명 / 협력 산업체: 72명)</li> <li>· 대내외 환경 분석 자료 및 구성원 의견 수렴을 종합하여 대학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2016.01.11.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교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대학발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재확인하였음</li> <li>· 대학발전계획은 대학평의원회(2016.01.19.), 이사회(2016.02.23.)를 거쳐 의결한 후 대학 구성원에게 공표하였음</li> <li>· 대학 구성원들이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대학 홈페이지 「대학안내」를 통하여 대학발전계획을 공유하였음</li> <li>· 또한 행정사무실 및 강의실, 대학 내 게시판에 공개하여 교직원 및 학생, 지역주민 등이 대학의 발전상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음</li> <li>· 대학알리미를 통하여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공개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1.1.2 대학발전계획

□ 진단항목 : 대학은 대학발전계획의 추진 및 달성 상황에 대한 평가체제를 갖추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에게 공유되어 개선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1.1.2-21, 2016 대학 중장기 · 특성화 계획서<br/>           Ⅲ-1.1.2-22, 행정업무편람(업무분장)<br/>           Ⅲ-1.1.2-23, 미래발전위원회 규정<br/>           Ⅲ-1.1.2-24, 대학지표평가위원회 규정<br/>           Ⅲ-1.1.2-25, 자체평가위원회 규정<br/>           Ⅲ-1.1.2-26, 대학발전계획 자체평가 계획 공문<br/>           Ⅲ-1.1.2-27, 대학발전계획 추진 성과 결과보고서<br/>           Ⅲ-1.1.2-28, 대학발전계획 성과결과 부서 공유 관련 공문<br/>           Ⅲ-1.1.2-29, 대학발전계획 자체평가 결과보고서<br/>           Ⅲ-1.1.2-30,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br/>           Ⅲ-1.1.2-31,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자체평가보고서 배부 및 공유</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대학발전계획에서 KPI를 설정하고 목표를 제시하였음</li> <li>· 대학발전계획의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기획실)을 두고 있음</li> <li>· 기획실에서는 대학발전계획의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구를 분리하여 확인하고 있음<br/>(대학발전계획 수립:미래발전위원회 / 발전계획 성과관리:대학지표평가위원회 / 대학발전계획 평가:자체평가위원회)</li> <li>· 대학발전계획 성과 및 평가를 위하여 매년 2월 계획을 수립함(기획실-1202, 2017.02.28.)</li> <li>· 대학지표평가위원회에서는 대학발전계획 목표에 대한 실적 및 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함</li> <li>· 대학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대학발전계획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심의 및 차년도 개선사항에 대한 계획을 심의하였음<br/>(기획실-1190, 2017.02.28., 기획실-1099, 2018.02.28)</li> <li>· 평가 결과는 매년 2월 각 부서 및 학과로 배부되어 부서 및 학과운영 계획에 반영하였음(2016.02.28. / 2017.02.28.)</li> </ul> |

□ 평가요소: 1.2.1 대학의 조직 및 운영

□ 진단항목: 대학은 행정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1.2.1-1, 정관<br/>Ⅲ-1.2.1-2, 학칙<br/>Ⅲ-1.2.1-3, 직제규정<br/>Ⅲ-1.2.1-4, 사무분장 규정<br/>Ⅲ-1.2.1-5, 위임전결 규정<br/>Ⅲ-1.2.1-6, 조직도<br/>Ⅲ-1.2.1-7, 행정업무편람</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p>(조직) 2016-1: 기획실, 산학협력단, 학사지원처, 산학협력처, 입시지원처, 평생직업교육처, 행정지원처<br/>2016-2: 기획실, 산학협력단, 학사처, 학생처, 산학협력처, 입학지원처, 행정지원처<br/>2017-1: 기획실, 산학협력단, 학사지원처, 학생지원처, 산학협력처, 입학지원처, 행정지원처<br/>2017-2: 기획실, 산학협력단, 학사지원처, 학생지원처 산학협력처, 행정지원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법인 윤정학원 정관 제93조에 하부조직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94조에 부속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음</li> <li>· 성덕대학교 학칙 제80조에 조직, 제17장 부속 및 부설기관에 기반을 두어 조직 체계를 갖추었음</li> <li>· 학교법인 윤정학원 정관 및 성덕대학교 학칙에 따라 하부부서 조직과 각 하부부서별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였음</li> <li>· 성덕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의거 본 대학의 제반 사무를 규정하고 부서별 업무분장을 명시하였음</li> <li>· 성덕대학교 직제규정 및 사무분장을 토대로 위임전결 규정을 통해 제반 문서의 결재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1.2.1 대학의 조직 및 운영

□ 진단항목: 대학은 대학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전산정보자료 포함)의 식별, 열람, 보관 등을 위한 규정을 갖추고 준수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1.2.1-8, 문서 규정 및 문서보존에 관한 세칙<br/>Ⅲ-1.2.1-9, 사무분장 규정<br/>Ⅲ-1.2.1-10, 행정업무 편람<br/>Ⅲ-1.2.1-11, 문서 수·발신 대장</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 작성 요청, 처리절차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문서 규정으로 두었음</li> <li>· 문서 규정 제2장 문서의 형식, 제3장 문서의 작용, 제5장 문서의 보관을 두어 공문서 작성부터 보관까지 내용을 포함함</li> <li>· 문서 규정에 따라 문서관리대장을 통해 문서일련번호를 생성하고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결재함</li> <li>· 외부문서는 행정지원처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수·발신 내용을 확인함</li> </ul> |

□ 평가요소: 1.2.1 대학의 조직 및 운영

□ 진단항목: 대학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신설 및 변경, 폐지 등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1.2.1-12, 제·규정관리 규정<br/>           Ⅲ-1.2.1-13, 규정심의위원회 규정<br/>           Ⅲ-1.2.1-14, 학칙<br/>           Ⅲ-1.2.1-15, 제·개정 관련 공문(규정 제·개정 신청서 포함)<br/>           Ⅲ-1.2.1-16, 규정심의위원회 회의록<br/>           Ⅲ-1.2.1-17, 대학평의원회 회의록<br/>           Ⅲ-1.2.1-18, 규정집 및 대학홈페이지 탑재 현황</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운영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제·규정 관리 규정을 두었음</li> <li>· 학칙 제77조에 의거하여 학칙의 제·개정은 14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였음</li> <li>· 제 규정의 주관부서는 기획실이며, 규정에 관한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입안서류(제 규정 관리 규정 별지서식 1)을 포함한 공문을 제출함</li> <li>· 주관부서에서는 제출한 규정 제·개정안을 검토한 후 규정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학년도 6회, 2017학년도 6회</li> </ul> </li> <li>· 심의한 규정은 규정집에 탑재하고 각 부서에 배부하며, 모든 구성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학 홈페이지(대학안내- 학칙 및 규정)에 탑재함</li> <li>· 학칙 및 시행세칙은 공포한 후 1달 이내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에 탑재함</li> </ul> |

□ 평가요소: 1.2.2 의사결정구조

□ 진단항목: 대학은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제도와 규정을 갖추어 준수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1.2.2-1,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정관, 학칙,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br/>           Ⅲ-1.2.2-2, 교원인사위원회 규정<br/>           Ⅲ-1.2.2-3,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br/>           Ⅲ-1.2.2-4,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학칙,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br/>           Ⅲ-1.2.2-5, 교원업적평가위원회 규정<br/>           Ⅲ-1.2.2-6, 교원징계위원회 규정<br/>           Ⅲ-1.2.2-7, 교무위원회 규정<br/>           Ⅲ-1.2.2-8, 미래발전위원회 규정<br/>           Ⅲ-1.2.2-9, 대학평의원회 수·발신 공문철(회의록 포함)<br/>           Ⅲ-1.2.2-10, 등록금심의위원회 수·발신 공문철(회의록 포함)<br/>           Ⅲ-1.2.2-11, 교원인사위원회, 교무위원회 회의록 및 소집통지서, 기안서류<br/>           Ⅲ-1.2.2-12, 제위원회 명단(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정관과 학칙에 근거를 두고 설치하였으며,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따로 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평의원회(11명): 교원 4명, 직원 3명, 학생 1명, 학교에 도움이 되는 자 3명(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4명, 직원 3명, 학생 2명, 학교에 도움이 되는 자 2명(2018)으로 변경</li> </ul> </li> <li>- 등록금심의위원회(8명): 교직원 3명, 학생 3명, 학교에 도움이 되는 자 2명(2017)</li> </ul> </li> <li>· 교원의 임용 및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참조), 교원업적평가에 대해서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였음</li> <li>· 대학 업무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심의하고 개진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1.2.2 의사결정구조

□ 진단항목 : 대학은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1.2.2-13, 성덕대학교 직원회 운영 규정<br/>           Ⅲ-1.2.2-14, 성덕대학교 교수회 운영 규정<br/>           Ⅲ-1.2.2-15, 성덕대학교 구성원 참여 소통에 관한 규정<br/>           Ⅲ-1.2.2-16, 성덕대학교 직원회, 교수회 회의록<br/>           Ⅲ-1.2.2-17, 성덕대학교 소통위원회 회의록</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직원회, 교수회, 구성원 참여 소통 규정을 두고 제도적으로 반영하고자 규정화함</li> <li>· 구성원 참여 · 소통에 관한 운영에 관한 실무는 기획실에서 담당하며, 대학의 주요 운영과 관련한 구성원의 협의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통위원회를 두었음</li> <li>· 구성원 운영 제안서를 기획실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수합된 의견은 소통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정보센터 전자도서관 구축 건(기획과-815, 2017.12.08., 소통위-8, 2017.12.13.)</li> </ul> </li> <li>· 교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각 제 위원회 회의, 전체교수 및 전체 교직원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였음</li> <li>·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법정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에 교수회에서는 교수위원, 직원회에서는 직원위원을 추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평의원회 교수 추천(교수회-4, 2016.03.21., 교수회-4, 2017.03.20., 교수회-9, 2017.09.11.)</li> <li>- 대학평의원회 직원 추천(직원회-4, 2016.03.16., 직원회-7, 2016.09.15., 직원회-4, 2017.03.13., 직원회-9, 2017.09.21.)</li> </ul> </li> </ul> |

□ 평가요소: 1.3.1 대학의 책무

□ 진단항목: 대학은 총장을 비롯한 구성원의 윤리적 책무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1.3.1-1, 교직원 복무규정<br/>           Ⅲ-1.3.1-2, 연구윤리 규정<br/>           Ⅲ-1.3.1-3,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br/>           Ⅲ-1.3.1-4, 대학윤리위원회 규정<br/>           Ⅲ-1.3.1-5, 내부감사규정<br/>           Ⅲ-1.3.1-6, 윤리실천강령(홈페이지 탑재자료)<br/>           Ⅲ-1.3.1-7,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2016, 2017)<br/>           Ⅲ-1.3.1-8,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대학은 대학 구성원의 근무기강 확립, 청렴과 품위유지 의무, 비밀엄수 등을 위하여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윤리실천 강령을 기반으로 확고한 윤리의식을 바탕 직무를 수행하였음</li> <li>· 교직원 및 학생들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강령을 탑재하여 대학의 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함</li> <li>· 매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족폭력 예방교육(행정지원처-231, 2016.05.03., 행정지원처-930, 2016.12.12.)</li> <li>- 2017년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족폭력 예방교육(행정지원처-870, 2017.08.11., 행정지원처-1724, 2017.12.15.)</li> </ul> </li> <li>·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기획실-648, 2016.09.26.), 부정청탁금지법 올바른 이해(기획실-100, 2017.03.31.)</li> </ul> </li> <li>·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중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입학정원 감축, 학생 모집 중지 및 휴업, 휴교 명령, 학교 폐쇄 명령을 받은 적 없음</li> </ul> |



□ 평가요소: 1.3.1 대학의 책무

□ 진단항목: 대학은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1.3.1-9, 예·결산 공개(홈페이지 탑재용)<br/>           Ⅲ-1.3.1-10, 2016회계연도,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br/>           Ⅲ-1.3.1-11, (공시자료)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br/>           Ⅲ-1.3.1-12,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이행완료 공문 및 증빙자료<br/>           Ⅲ-1.3.1-13, 감사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문</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에서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내·외부회계감사를 거쳐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으며, 법인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후 홈페이지 예·결산 공고 배너에 탑재하였음</li> <li>· 교원 재임용은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음. 또한 재임용 결과 통보 시 이의가 있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음을 함께 공지하였음</li> <li>· 대학에서는 2016년 ~ 2017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직원 및 학생 징계위원회, 부당 노동 행위, 행정재판 등에 대하여 위원회를 진행하거나 외부 기관에 적발된 사례가 없음</li> <li>· 대학 기본역량 진단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정부 제재 대상에 상응하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적 없음(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도 부정비리 감점 없음)</li> <li>·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특정감사에 대한 2건의 지적 내용에 대해서 ‘경고’ 처리하여 이행 완료함(윤정학원-53 2016.05.09.)</li> <li>· 종합감사에 대한 1건의 지적 내용은 대학 설립 초기 발생한 사안으로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중에 있어 행정처분에서 ‘유보’ 처리됨(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2580, 2015.09.11., 사학감사담당관-3353, 2016.10.19.)</li> </ul> |

□ 평가요소: 1.3.1 대학의 책무

□ 진단항목: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협력·기여를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1.3.1-14, 성덕대학교 지역사회협력 촉진에 관한 규정<br/>           Ⅲ-1.3.1-15, 사회봉사단 운영 규정<br/>           Ⅲ-1.3.1-16,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지역사회 협력 운영계획서<br/>           Ⅲ-1.3.1-17, 2017년 지역사회 정책수요조사 분석보고서<br/>           Ⅲ-1.3.1-18,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의성군, 영천시)<br/>           Ⅲ-1.3.1-19,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 참여 실적 및 자체평가보고서<br/>           Ⅲ-1.3.1-20, 대학 특성화 기반 지역협력 실적 자료<br/>           Ⅲ-1.3.1-21, 지역주민 역량강화 평생교육 실적 자료<br/>           Ⅲ-1.3.1-22, 지역봉사 실적자료</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을 위하여 기획실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처, 사회봉사단 등 각 부서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음</li> <li>·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운영계획(기획실-1321, 2016.02.29., 기획실-1203, 2017.02.28.)을 수립하였음</li> <li>·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협력·기여 방법을 모색하고자 정책수요조사 및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함 (기획실-1176, 2017.02.22.)</li> <li>· 2017년 성덕대학교 지역사회협력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음</li> <li>· 대학에서는 지역주민 역량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장애인과 아동지원 중심 지역사회 봉사, 대학 특성화 기반의 지역협력이라는 3가지 분야로 특화 하여 사회봉사 활동 및 지자체 협력 활동을 실시하였음 (산학협력처-747, 2017.02.08., 산학협력처-360, 2018.0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양해각서를 통합 업무 협약 : 영천시, 의성군</li> <li>- 대학 특성화 기반 지역협력: 의성군 재활승마 프로그램(의성군 유통축산과-11721, 2016.05.09.),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사회공익 재활승마(영천시 말산업육성과-1983, 2016.04.22., 말산업육성과-1864, 2017.04.10.) 포항지진 주민 심리상담 지원(학생상담센터-217, 2017.11.22.)</li> <li>- 지역주민 역량향상 평생교육 :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와 교육 운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승마 전문 인력 양성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19, 2017.03.03.)</li> <li>- 지역사회 봉사: 산사랑 물사랑 자연보호 캠페인(학사지원처-1689, 2016.09.06., 사회봉사단-12, 2017.09.19.) 아이사랑 시력관리 지원 사업(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10827, 2016.06.01., 교육지원과-12648, 2017.06.08.) 진로체험(산학협력처-626, 2016.10.07., 산학협력처-658, 2016.11.07., 산학협력처-185, 2017.10.11.)</li> </ul> </li> </ul> |

□ 평가요소: 1.3.2 교육품질 개선

□ 진단항목: 대학은 교육품질의 평가·개선을 위한 조직체계 및 규정(지침)을 갖추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1.3.2-1, 대학자체평가 규정<br/>           Ⅲ-1.3.2-2, 대학지표평가위원회 규정<br/>           Ⅲ-1.3.2-3, 대학자체평가위원회 규정<br/>           Ⅲ-1.3.2-4, NCS지원센터 운영 규정<br/>           Ⅲ-1.3.2-5, 행정업무편람(2017)<br/>           Ⅲ-1.3.2-6, 조직도(2016, 2017)<br/>           Ⅲ-1.3.2-7, 대학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 및 대학 발전계획 자체평가 결과보고서<br/>           Ⅲ-1.3.2-8, 대학지표평가위원회 회의록 및 대학 발전계획 추진 성과 결과 보고서</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직체계를 개선하고 있음</li> <li>· 대학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업무는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기획실에서 담당하며, 2017.09.06.평가업무의 독립적인 운영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획실 산하 평가관리과를 신설하여 외부 평가에 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음</li> <li>· 대학자체평가는 학칙 제99조(자체평가)에 의거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였음</li> <li>· 학칙에 따라 대학자체평가 규정에 제정하고 대학의 교육, 조직, 운영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음</li> <li>· 대학자체평가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자체평가 기본방향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두었음</li> <li>· 대학의 발전계획 추진 운영 및 대학의 각종 지표에 대한 검증, 평가, 개선을 위한 대학지표평가위원회를 두어 관리함</li> <li>· 대학 발전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결과를 배부하고 각 부서별 개선사항을 논의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음(기획실-1155, 2017.02.15. 자체평가위원회-9, 2017.02.28. / 기획과-1051, 2018.02.12. 자체평가위원회-9, 2018.02.28.)</li> <li>· NCS기반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은 NCS지원센터에서 담당함</li> <li>· NCS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의거 NCS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1.3.2 교육품질 개선

□ 진단항목: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체제는 기관평가인증 영역을 포함하여 교육목표, 대학발전계획, 외부평가 등과 관련된 학내외의 다양한 평가지표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1.3.2-9, 20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행실적보고서<br/>           Ⅲ-1.3.2-10, 2017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행실적보고서<br/>           Ⅲ-1.3.2-11, 2016년 대학발전계획 (내부)자체평가 결과보고서<br/>           Ⅲ-1.3.2-12, 2017년 대학발전계획 (내부)자체평가 결과보고서<br/>           Ⅲ-1.3.2-13, 2016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br/>           Ⅲ-1.3.2-14,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br/>           Ⅲ-1.3.2-15, 대학 발전계획 자체평가 계획(2016,2017)<br/>           Ⅲ-1.3.2-16, 2016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편람<br/>           Ⅲ-1.3.2-17,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편람<br/>           Ⅲ-1.3.2-18, 대학지표간의 연계성</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교육목표와 대학 발전계획 지표는 대학 구조개혁평가 및 기관평가 인증의 평가 요소 및 지표 중 우리 대학의 여건에 따라 선정되어 평가하여 개선하였음</li> <li>· 대학의 교육목표와 대학발전계획 평가를 위하여 평가의 절차 및 시기, 방법을 정하여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공지하였음(기획실-1319, 2016.02.29., 기획실-1202, 2017.02.28.)</li> <li>· 대학에서는 교육목표와 대학발전계획의 성과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하였음 (자체평가위원회-9, 2017.02.27. 자체평가위원회-9, 2018.02.27.)</li> <li>· 2016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제 편람에 의거하여 9개 기준, 25개 세부기준, 62개 평가요소를 자체 평가하였음 (기획실-1204, 2017.02.28. 기획실-1101, 2018.02.28.)</li> <li>· 2015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편람에 의거하여 6개 항목, 16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였음 (기획실-405, 2016.6.24. 기획실-234, 2017.05.24.)</li> </ul> |

평가요소: 1.3.2 교육품질 개선

진단항목: 대학은 교육품질의 평가·개선을 위한 평가체계에 근거하여 매년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1.3.2-19, 대학발전계획 (내부)자체평가 결과보고서(2016, 2017)<br/>           Ⅲ-1.3.2-20, 자체평가 결과보고서(2016, 2017)<br/>           Ⅲ-1.3.2-21, 대학 구조개혁평가 이행실적보고서(2016, 2017)<br/>           Ⅲ-1.3.2-22, 대학지표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2월 대학발전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대학의 실행과제에 따른 KPI를 평가하였음</li> <li>· 매년 기관평가 인증 자체평가를 통하여 인증원에서 제시한 9개 기준, 25개 세부기준, 62개 평가요소의 주요 판단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li> <li>·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의거 대학에서는 자체 추진과제 계획을 세우고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2016.06.24, 2017.07.05)</li> </ul> |

□ 평가요소: 1.3.2 교육품질 개선

□ 진단항목 : 평가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공개되고 전 구성원에게 공유되며, 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선계획 및 실행을 통해 개선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1.3.2-23, 대학운영계획서(2016, 2017)<br/>           Ⅲ-1.3.2-24, 대학운영결과보고서(2016, 2017)<br/>           Ⅲ-1.3.2-25, 대학 발전계획 추진 성과 결과보고서 배부 및 개선자료 제출요청<br/>           Ⅲ-1.3.2-26, 대학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br/>           Ⅲ-1.3.2-27, 대학 발전계획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배부 및 공유(2016, 2017)<br/>           Ⅲ-1.3.2-28,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대학홈페이지 공지<br/>           Ⅲ-1.3.2-29, 기관평가인증 평가요소 중간평가 체크리스트(2016, 2017)<br/>           Ⅲ-1.3.2-30, 2016 대학구조개혁 과제추진 계획서<br/>           Ⅲ-1.3.2-31, 2017 대학구조개혁 과제추진 계획서</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발전계획 추진 성과 결과 보고서를 각 부서에 배부하고 각 부서별 개선자료를 제출하였음<br/>(기획실-1173, 2017.02.22., 기획실-1071, 18.02.22)</li> <li>·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추진 성과 결과보고서 및 부서별 개선자료를 수합하고 검토하여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함</li> <li>· 대학 발전계획 자체평가 보고서는 각 부서로 배부하여 실행하도록 진행하였음<br/>(기획실-1200, 2017.02.28., 기획실-1100, 18.02.28)</li> <li>· 대학 기관평가 인증 평가요소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는 대학 홈페이지 자체평가결과 및 대학정보공시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였음</li> <li>· 대학 기관평가 인증 평가요소에 따라 중간평가를 통해 평가인증 요소가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활동을 수행하였음<br/>(기획실-603, 2016.09.07., 평가관리과-103, 17.11.25)</li> <li>· 20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각 부서별로 과제추진 계획서를 받아 개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li> <li>· 과제추진 계획에 따른 개선을 통하여 이행실적보고서로 제출하였음(2016.2, 2017.03.17.)</li> </ul> |

□ 평가요소: 1.3.3 교육만족도

□ 진단항목: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교육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류, 개선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1.3.3-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규정<br/>           Ⅲ-1.3.3-2, 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2016, 2017)<br/>           Ⅲ-1.3.3-3, 졸업생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2016, 2017)<br/>           Ⅲ-1.3.3-4,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2016, 2017)<br/>           Ⅲ-1.3.3-5, 산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2016, 2017)<br/>           Ⅲ-1.3.3-6,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절차 공문(2016, 2017)<br/>           Ⅲ-1.3.3-7,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1.3.3-8,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안 보고 공문(2016, 2017)<br/>           Ⅲ-1.3.3-9, 만족도 조사 개선 방안 공유 공문(2016, 2017)<br/>           Ⅲ-1.3.3-10, 부서 운영계획서(2017, 2018)<br/>           Ⅲ-1.3.3-11, 교비회계 예산서(2017, 2018)</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년 2회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를 대상으로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및 서비스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학년도 1차: 만족도조사위원회-25, 2016.06.21., 2016학년도 2차: 만족도조사위원회-50, 2016.11.08.</li> <li>- 2017학년도 1차: 만족도조사위원회-28, 2017.06.22., 2017학년도 2차: 만족도조사위원회-58, 2018.02.19</li> </ul> </li> <li>· 2017학년도부터 평가의 객관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조사기관(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하여 교육과정, 학생서비스, 학사운영, 교육환경 등 전반적인 교육활동 항목에 대한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기획과-322, 2017.06.27, 기획과-1038, 2018.02.08.)</li> <li>· 만족도 조사 결과는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을 통한 중점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위원회의 심의(2016.02.20., 2016.11.07., 2017.06.19., 2018.02.26.)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하였음</li> <li>·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안은 공문(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위원회-28, 2016.07.05.,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위원회-53, 2016.11.30.,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위원회-31, 2017.06.26.,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위원회-61, 2018.02.19.)을 통해 각 학과 및 부서와 공유하며, 각 부서에서는 차년도 부서 운영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여 개선을 시행하였음</li> </ul> |

## 기준 2. 교육과정



□ 평가요소: 2.1.1 교육과정 정책

□ 진단항목: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산업체 요구수준, 학위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 품질 보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정책을 갖추어 시행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2.1.1-1,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의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p> <p>Ⅲ-2.1.1-1, 학칙<br/>Ⅲ-2.1.1-2, 학칙 시행세칙<br/>Ⅲ-2.1.1-3, 교육과정개발 및 편성지침<br/>Ⅲ-2.1.1-4,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지침<br/>Ⅲ-2.1.1-5, NCS지원센터 운영 규정<br/>Ⅲ-2.1.1-6, 산학협력운영위원회 규정<br/>Ⅲ-2.1.1-7,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br/>Ⅲ-2.1.1-8, 교무위원회 규정<br/>Ⅲ-2.1.1-9, NCS직무능력성취도 평가 규정<br/>Ⅲ-2.1.1-10,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지침<br/>Ⅲ-2.1.1-11, 학사운영 규정<br/>Ⅲ-2.1.1-12, 학사관리 지침<br/>Ⅲ-2.1.1-13, 수업관리 지침<br/>Ⅲ-2.1.1-14, 시간제 등록생 운영 규정<br/>Ⅲ-2.1.1-15, 학사제도 운영 실적 증빙자료(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산업체 요구수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학위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정책을 수립하였음</li> <li>·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정책은 학칙에 명시하고 관련 학사규정의 제·개정을 통하여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음</li> <li>· NCS지원센터(2015.02.04.)를 설치하여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개편, 운영, 평가, 교육품질관리를 전담하고, 학생직무능력측정과 교육품질관리를 위해 NCS직무능력성취도평가위원회와 학과별 NCS전담교수제(2016.03.14., 2017.03.14.)를 운영하였음</li> <li>· 교육과정 수립 시 교육과정개발·편성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학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재학생, 졸업생 및 산업체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운영결과를 평가·분석하고,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년도 운영에 반영하며,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개선방안 마련 및 실행사항은 현장중심 교육목표 재설정, 현장중심 교육과정 체제 재구조화, 전공교과목 재구조화의 보완사항을 환류하였음</li> <li>· 교육품질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전과제도, 계절학기, 시간제 등록생 등의 학사제도를 도입·운영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2.1.1 교육과정 정책

□ 진단항목: 학과의 개설, 통폐합이나 폐지 등은 정해진 규정(혹은 지침)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2.1.1-16,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br/>           Ⅲ-2.1.1-17, 정원조정위원회 규정<br/>           Ⅲ-2.1.1-18, 대내외 환경 분석보고서 및 공문<br/>           Ⅲ-2.1.1-19, 의견수렴 보고서 및 공문<br/>           Ⅲ-2.1.1-20, 교직원 워크숍 관련 자료<br/>           Ⅲ-2.1.1-21, 중장기 발전 계획 보고서<br/>           Ⅲ-2.1.1-22, 특성화 계획 보고서<br/>           Ⅲ-2.1.1-23, 학과 평가 공문<br/>           Ⅲ-2.1.1-24, 학과별 의견서<br/>           Ⅲ-2.1.1-25, 재학생 및 졸업생 설문 조사 자료<br/>           Ⅲ-2.1.1-26, 폐지 학과 관련 간담회 자료<br/>           Ⅲ-2.1.1-27, 정원 조정 관련 공문<br/>           Ⅲ-2.1.1-28, 정원조정위원회 회의록<br/>           Ⅲ-2.1.1-29, 폐지 학과 의견수렴 결과 보고<br/>           Ⅲ-2.1.1-3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원 조정 관련 공문<br/>           Ⅲ-2.1.1-31, 폐지학과 후속조치 관련 자료</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 정원조정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학과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음</li> <li>· 대내외 환경 분석(2015.11.) → 의견 수렴(2015.12.) → 대학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학과 구조 조정(2016.01.~03.)을 정원조정위원회(2016.02.13., 02.19., 03.23., 04.18.)심의를 통하여 진행하고 후속조치(학생상담, 전공전환 기회 부여, 타 대학 편입, 강사 위촉)를 진행하였음</li> <li>· 대학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과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음</li> </ul>   |

평가요소: 2.1.2 교육과정 개발

진단항목: 학과별 교육과정의 개발(개편)은 정해진 교육과정 운영정책과 필요에 따라 평가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b>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b> | <p>Ⅲ-2.1.2-1,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의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p> <p>Ⅲ-2.1.2-1, 학칙</p> <p>Ⅲ-2.1.2-2, 학칙 시행세칙</p> <p>Ⅲ-2.1.2-3, 교육과정개발 및 편성 지침</p> <p>Ⅲ-2.1.2-4,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지침</p> <p>Ⅲ-2.1.2-5, 산학협력운영위원회 규정</p> <p>Ⅲ-2.1.2-6,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p> <p>Ⅲ-2.1.2-7,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p> <p>Ⅲ-2.1.2-8, NCS직무능력성취도 평가 규정</p> <p>Ⅲ-2.1.2-9,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지침</p> <p>Ⅲ-2.1.2-10,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보고서(심의자료)</p> <p>Ⅲ-2.1.2-11, 2016학년도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매뉴얼</p> <p>Ⅲ-2.1.2-12, 2017학년도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개편)결과보고서(2016연구)</p> <p>Ⅲ-2.1.2-13, 2017학년도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개편)결과보고서(2016연구)</p> <p>Ⅲ-2.1.2-14, 2017학년도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편 매뉴얼</p> <p>Ⅲ-2.1.2-15, 학과별(산업체, 재학생, 졸업생)요구조사 결과분석(2015, 2016)</p> <p>Ⅲ-2.1.2-16, NCS운영위원회 회의록</p> <p>Ⅲ-2.1.2-17, 학과별 교육과정개발위원회 회의록</p> <p>Ⅲ-2.1.2-18,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록</p> <p>Ⅲ-2.1.2-19, 교육과정 심의결과 자료(2015, 2016)</p> <p>Ⅲ-2.1.2-20,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15, 2016)</p> <p>Ⅲ-2.1.2-21, 교육과정편성 승인 내부결재(2015, 2016)</p> <p>Ⅲ-2.1.2-22, NCS기반 교육과정운영 자체평가결과보고서(2016, 2017)</p> |

Ⅲ-2.1.2-23, NCS기반 교육과정운영 학과CQI보고서(2016, 2017)  
 Ⅲ-2.1.2-24, NCS기반 교육과정운영 대학CQI보고서(2016, 2017)  
 Ⅲ-2.1.2-25, 교과목CQI보고서(2016, 2017)

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

- 학과 및 학부(전공)는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편성 및 운영 지침 등에 의거하여 대학의 사명과 목표에 부합하는 학과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학과별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편성하고 운영하였음
- 학과 및 학부(전공)는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준수하여, NCS 적용학과는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NCS유보학과는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음
- 학과 및 학부(전공)별 교육과정은 대학이 정해놓은 교육과정 개발 절차에 따라 재학생과 졸업생 및 산업체의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환경 분석과 인력동향 조사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 반영토록 하였음
-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산업체직무전문가(SME)를 포함한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산업체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도출하였음
-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2016.01.15., 2017.02.13., 2017.02.22.)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2016.02.22., 2017.02.24.) 자문 결과에 따라 개발(개편)하고 승인·운영하였음
-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심의·평가한 후 학과 및 학부(전공)로 다시 환류하였으며, 학과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평가를 위하여 학과별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자체평가(2017.02.02., 2018.01.31.)를 실시하고, 학과 CQI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 교과목CQI보고서, 학과자체평가결과보고서와 학과CQI보고서, 학생직무능력평가 결과의 자료를 활용하여 차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환류하였음

평가요소: 2.1.2 교육과정 개발

진단항목: 교육과정 개발(개편) 시 외부환경 변화 및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2.1.2-26, 산업동향 및 환경 분석(2016, 2017)<br/>Ⅲ-2.1.2-27,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완을 위한 설문조사(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과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산업체 수요조사, 재학생 및 졸업생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 분석과 인력전망, 재학생 요구 및 희망직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개편)하였음</li> <li>· 대학은 재학생 및 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2016.04.25.~05.31., 10.03.~10.30., 2017.04.10.~05.10., 2017.11. 20.~2018.02.05.)를 실시 및 결과를 분석하여 학과교육과정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차년도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하게 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2.1.2 교육과정 개발

□ 진단항목: 대학은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 또는 개편 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2.1.2-28,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연구비지원 내부결재 자료<br/>           Ⅲ-2.1.2-29, NCS기반 교수학습지침서 개발비 지원 내부결재 자료<br/>           Ⅲ-2.1.2-30,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개편) 결과보고서(2016, 2017)<br/>           Ⅲ-2.1.2-31, NCS기반 교수학습지침서 개발 결과보고서(2016, 2017)<br/>           Ⅲ-2.1.2-32, NCS 워크숍 시행 실적 자료<br/>           Ⅲ-2.1.2-33, 2016 NCS기반 단기 교원 산업체 현장연수 지원 내부결재 자료<br/>           Ⅲ-2.1.2-34, 2017 NCS기반 단기 교원 산업체 현장연수 지원 내부결재 자료</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평가와 개선을 위해 NCS지원센터를 설치(2015.02.04.)하고 전담직원(이인우)을 배치하였음</li> <li>· NCS기반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완료(2016.12.07., 총 49,500천원)하여 운영관리 및 평가에 수월성을 제공하였음</li> <li>·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NCS워크숍(2016.10.10. 외 총 6회)을 실시하였고,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매뉴얼,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매뉴얼 제공(NCS지원센터-10, 2016.03.07., NCS지원센터-138, 2016.09.01.) 및 포트폴리오 작성양식(NCS지원센터-176, 2017.09.30)을 지원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2.1.2 교육과정 개발

□ 진단항목: 교육과정 개발(개편)이 아닌 교육과정 일부변경(일부 교과목 수정)의 경우 현 교육과정 개발 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가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2.1.2-35, 교과목CQI 보고서<br/>           Ⅲ-2.1.2-36, 학과별CQI보고서<br/>           Ⅲ-2.1.2-37, 대학CQI보고서<br/>           Ⅲ-2.1.2-38, 학과별 교육과정 변경 사유서<br/>           Ⅲ-2.1.2-39, 교육과정운영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2.1.2-40, NCS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매년 지속적인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교과목CQI, 학과별CQI, 대학CQI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학과의 전반적 성과, 교육과정, 교육환경, 재학생, 교수)와 개선활동을 실시하였음</li> <li>· 성과점검 단계의 CQI평가는 교육과정개발위원회 구성 → 자료집 작성 → 평가실시 → 최종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의 순으로 진행되었음</li> <li>· 대학은 운영 및 개폐관련 규정에 의거 개폐심사는 1년 단위임</li> <li>· 개폐절차는 사전자료 분석 → 학과 교수회의 → 전공 교과목 검토 및 심의 → 운영위원회 승인 → 결과통보 총 5단계로 교과목에 대한 개폐 여부를 확정하였음</li> <li>· 해당 학과에서 교육운영결과에 대한 사전자료 분석과 학과별 교수회의를 통해 교육과정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체 전문가, 학과장 검토 및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2016.01.25., 2017.02.22.) 승인을 통해 최종 결정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2.2.1 현장중심 전공교육

□ 진단항목: 학과는 교육목표 및 학습 성취수준 달성을 위하여 전공교과(실습 및 이론)를 적절히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2.2.1-1, 12-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학생규모별 강좌 수)</p> <p>Ⅲ-2.2.1-1, 교육과정 편성 지침</p> <p>Ⅲ-2.2.1-2,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p> <p>Ⅲ-2.2.1-3,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록(2016, 2017)</p> <p>Ⅲ-2.2.1-4, 학과별 교과과정표(2016, 2017)</p> <p>Ⅲ-2.2.1-5,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개편) 매뉴얼(2015, 2016)</p> <p>Ⅲ-2.2.1-6, 2016학년도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p> <p>Ⅲ-2.2.1-7, 2017학년도 NCS기반 교육과정 개편(보완) 결과보고서(2016연구)</p> <p>Ⅲ-2.2.1-8, 2017학년도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편(보완) 결과보고서(2016연구)</p> <p>Ⅲ-2.2.1-9, 학과별 전공교과목의 실습 및 이론과목 편성 비율표</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과는 교육과정 편성지침의 실습 및 이론 교과목 편성비율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성은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음(2016.01.15., 2017.02.13., 2017.02.22.)</li> <li>· 학과 교육목표와 편성된 전공교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은 학과 교육 목표와 인재양성 유형에 맞는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발하도록 설정하였음</li> <li>· 실습 및 이론 교과목 편성 비율은 전공교과 편성, 실습 및 이론과목 편성정책과 지침에 맞게 운영하였음</li> </ul>  |



평가요소: 2.2.1 현장중심 전공교육

진단항목: 학과는 인재양성 목표에 따라 학생이 갖추어야 할 직무능력(이론지식 및 기술능력) 수준을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2.2.1-10,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편(보완) 매뉴얼(2016, 2017)<br/>           Ⅲ-2.2.1-11,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2016, 2017)<br/>           Ⅲ-2.2.1-12, 종합정보시스템 강의계획서 캡처 화면<br/>           Ⅲ-2.2.1-13, NCS기반 운영관리시스템 강의계획서 캡처 화면</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매뉴얼을 제작하여 달성해야 할 학습목표 및 성취수준(지식 및 기술 수준)을 제시하였음</li> <li>· 교육과정 개발보고서에 학과의 인재양성 목표에 근거한 직무능력 수준을 명시하고 성취수준,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기술·지식·태도에 대한 기준을 교과목 명세서에 제시하였음</li> <li>·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은 NCS기반 운영관리시스템(<a href="http://ncs.ac.kr">http://ncs.ac.kr</a>)을 통해 NCS 운영교과목의 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교과목표, 특징, 교과목 개요, 능력단위, 성취수준,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li> </ul> |

평가요소: 2.2.1 현장중심 전공교육

진단항목: 각 교과별 강의계획서는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성취 수준(지식 및 기술), 평가방법, 교수학습방법 등을 포함하고,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공지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2.2.1-14,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강의계획서, 교과목 개요)<br/>Ⅲ-2.2.1-15, NCS기반 운영관리시스템(강의계획서, 교과목 개요)<br/>Ⅲ-2.2.1-16, 교육과정 편람(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CS기반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NCS운영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강의계획서는 교과목표, 특징, 교과목 개요, 능력단위, 성취수준,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도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음</li> <li>·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에 학습목표, 학습내용, 성취수준, 평가방법 등의 운영을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음</li> <li>· 학과의 교육과정은 대학 종합정보시스템(<a href="http://sub.sdc.ac.kr/sdc/index.asp">http://sub.sdc.ac.kr/sdc/index.asp</a>)를 통해 강의계획서, 교과목 개요를 게시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음</li> <li>· 수강신청 기간 전에 각 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편람을 통해 학과의 교육목표 및 특징, 교과목 개요 등을 열람하도록 하였음</li> </ul> |

평가요소: 2.2.1 현장중심 전공교육

진단항목: 학기별 전공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는 적절한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2.2.1-17, 강의시수 표 및 시간표 작성지침<br/>Ⅲ-2.2.1-18, 출석부(2016, 2017)<br/>Ⅲ-2.2.1-19, 학과별 강좌 당 수강인원(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당 전공교과 강좌 당 학생 수는 평균 31.3명 이하로 운영하였음</li> <li>- 2016학년도 1학기: 32.5명(8,986명/276개 강좌), 2학기: 31.2명(8,717명/279개 강좌)</li> <li>- 2017학년도 1학기: 31.7명(9,047명/285개 강좌), 2학기: 29.9명(8,617명/288개 강좌)</li> <li>· 모든 전공 교과목의 강좌 당 학생 수를 33명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의시수 표 및 시간표 작성지침으로 규정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2.2.2 직업기초, 기초학습 및 교양교육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의 인성과 교양 함양을 위하여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양교육 운영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2.2.2-1, 교육과정 편람(2016, 2017)<br/>           Ⅲ-2.2.2-2, 학과별 교과과정표(2016, 2017)<br/>           Ⅲ-2.2.2-3, 교육과정개발 및 편성 지침<br/>           Ⅲ-2.2.2-4,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지침<br/>           Ⅲ-2.2.2-5,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br/>           Ⅲ-2.2.2-6,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br/>           Ⅲ-2.2.2-7, 학기별 교양과목 개설 현황(2016, 2017)<br/>           Ⅲ-2.2.2-8, 교양교육과정만족도조사(재학생: 2016, 2017)<br/>           Ⅲ-2.2.2-9,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록<br/>           Ⅲ-2.2.2-10, 교양교과목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회의록<br/>           Ⅲ-2.2.2-11, 대학평의원회 회의록</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사회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교양 영역과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기초영역을 근간으로 교양교과목을 개설·운영하여 대학 설립이념과 사명 그리고 대학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양교육 정책을 구현하였음</li> <li>·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교양 개설교과목을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과 문제해결 외 4개 교과목) 및 교양 공통과목(사회봉사 외 2개 교과목), 학과별 선택 교양교과(최대 3개 학과)로 편성·운영하였음</li> <li>· 교양교과목은 교양교육과정 만족도조사(2016.12.30, 2017.12.30.)에 근거하여 개설 및 수정·보완하여 운영하였음</li> <li>· 교양교과목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심의(2016.01.25., 2017.02.22.),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2016.01.15., 2017.02.13., 2017.02.22.)및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얻어 최종 확정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2.2.2 직업기초, 기초학습 및 교양교육

□ 진단항목: 대학은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향상 교육을 적절히 제공하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2.2.2-12,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지침<br/>Ⅲ-2.2.2-13, 학과별 교과과정표(2016, 2017)<br/>Ⅲ-2.2.2-14, 학기별 교양과목 개설 현황(2016, 2017)<br/>Ⅲ-2.2.2-15, 직업기초능력 비정규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개발 및 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학년도 : 대학공통 5개 교과목(의사소통과 문제해결 외 4개 교과목)</li> <li>- 2017학년도 : 대학공통 5개 교과목(의사소통과 문제해결 외 4개 교과목), 학과특성에 따른 6개 교과목 (웰니스와 자기성장 외 5개 교과목)</li> </ul> </li> <li>· 재학생의 지속적인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하여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학년도 : 문서 및 리포트 작성 스킬 특강 외 4개 프로그램</li> <li>- 2017학년도 : 대인관계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외 3개 프로그램</li> </ul> </li> </ul> |

□ 평가요소: 2.2.2 직업기초, 기초학습 및 교양교육

□ 진단항목: 대학은 학위 수준에 부합하는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습능력 향상교육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2.2.2-16,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br/>           Ⅲ-2.2.2-17, 기초학습능력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br/>           Ⅲ-2.2.2-18, 교수학습지원센터 부서운영계획서(2016)<br/>           Ⅲ-2.2.2-19, 교수학습지원센터 부서운영계획서(2017)<br/>           Ⅲ-2.2.2-20, 신입생 기초학습능력평가 관련 공문(2016)<br/>           Ⅲ-2.2.2-21, 신입생 기초학습능력평가 관련 공문(2017)<br/>           Ⅲ-2.2.2-22,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관련 공문 및 실적자료(2016)<br/>           Ⅲ-2.2.2-23, 기초학습능력 향상 교육관련 공문 및 실적자료(2017)<br/>           Ⅲ-2.2.2-24,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자체 문항개발 관련 공문</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학생의 학습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습능력평가 및 향상 교육 지원 제도(기초학습능력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를 갖추고 있으며,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문항을 자체개발(2017.02.21)하여 적용하였음</li> <li>· 기초학습능력평가 자체문항 개발은 2017.09~2018.02에 걸쳐 내부교수(유아교육과 한진주 교수 외 3명)와 외부교수(대구한의대학교 최손환 교수) 총 5명이 국어, 영어영역에 대한 문항을 개발하고, 연구비를 지원하였음(2017.02.23, 총 1,700천원)</li> <li>·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능력 평가를 실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03: 언어 285명, 수리 282명</li> <li>- 2017.03: 언어 521명, 수리 524명</li> </ul> </li> <li>· 평가 하위 5%학생 대상으로 기초학습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03.28~31: 총 50명</li> <li>- 2017.04.14: 총 47명</li> </ul> </li> </ul> |

평가요소: 2.2.3 실험실습교육 지원

진단항목: 실험·실습비(산단회계 포함) 지원은 적당한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2.2.3-1, 2015학년도 재학생 현황<br/>           Ⅲ-2.2.3-2, 2016학년도 재학생 현황<br/>           Ⅲ-2.2.3-3, 2015회계연도 실험·실습비 집행내역<br/>           Ⅲ-2.2.3-4, 2016회계연도 실험·실습비 집행내역</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회계기준(2016년 공시기준), 2016년 회계기준(2017년 공시기준)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기준을 충족하였음</li> <li>· 2015년도 총 실험·실습비 246,429,165원에 대한 재학생 1,356명의 1인당 실험·실습비 181,732원</li> <li>· 2016년도 총 실험·실습비 215,942,148원에 대한 재학생 1,364명의 1인당 실험·실습비 158,315원</li> </ul> |

□ 평가요소: 2.2.3 실험실습교육 지원

□ 진단항목: 대학은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신청, 유지, 관리, 개선 절차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2.2.3-5, 2015학년도 실험·실습비 확충 계획 관련 자료<br/>           Ⅲ-2.2.3-6, 2016학년도 실험·실습비 확충 계획 관련 자료<br/>           Ⅲ-2.2.3-7, 2015학년도 실험실습기자재 선정심의 위원회 회의록<br/>           Ⅲ-2.2.3-8, 2016학년도 실험실습기자재 선정심의 위원회 회의록<br/>           Ⅲ-2.2.3-9, 실험실습 및 기자재 관리 규정<br/>           Ⅲ-2.2.3-10, 실험실습기자재 선정심의위원회 규정<br/>           Ⅲ-2.2.3-11, 2015학년도 기자재관리 대장<br/>           Ⅲ-2.2.3-12, 2016학년도 기자재관리 대장<br/>           Ⅲ-2.2.3-13, 2015학년도 물품관리 대장<br/>           Ⅲ-2.2.3-14, 2016학년도 물품관리 대장</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실험실습 기자재 및 재료의 신청, 유지, 관리, 개선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된 규정과 절차를 준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자재 및 재료를 확보, 관리하였음</li> <li>·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규정, 실험실습기자재 선정심의 위원회 회의록(2015.02.09., 2016.02.19.), 관리대장(2015학년도, 2016학년도), 실험·실습비 확충계획 공문 등을 통해 시행하였음</li> </ul>   |



## 기준 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지원

□ 평가요소: 3.1.1 학생선발

□ 진단항목: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며, 개인의 신체나 신념, 인종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학생 선발정책을 수립하여 공지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3.1.1-1,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br/>           Ⅲ-3.1.1-1,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2016, 2017)<br/>           Ⅲ-3.1.1-2, 학칙<br/>           Ⅲ-3.1.1-3, 201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br/>           Ⅲ-3.1.1-4, 201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br/>           Ⅲ-3.1.1-5,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br/>           Ⅲ-3.1.1-6,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br/>           Ⅲ-3.1.1-7,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보고 내부결재<br/>           Ⅲ-3.1.1-8,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보고 내부결재<br/>           Ⅲ-3.1.1-9, 2016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 심의 관련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록<br/>           Ⅲ-3.1.1-10, 2017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 심의 관련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록<br/>           Ⅲ-3.1.1-11, 2016학년도 입시모집 관련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회의록<br/>           Ⅲ-3.1.1-12, 2017학년도 입시모집 관련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회의록</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3조 및 제34조 및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반영하고, 학칙 제1장 제1조(목적)에 근거하여 면접 및 성적반영계획 등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였음</li> <li>· 신입생 선발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대학알리미 및 홈페이지 공지, 신입생 모집요강을 제작하여 홍보를 통해 모집하였음</li> <li>· 선발기준은 대학사명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정원내 특별전형 지원 자격 중(대학자체기준) 봉사활동실적자, 각종 대회입상 및 참가자, 각종포창(선행상, 모범상 등)수상자, 외국고교졸업자 등을 기준에 포함하였음</li> <li>·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제한에 따른 차별이 없는 모집을 위해 정원 내 특별전형 중(대학자체기준) 국제결혼이주자가족,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을 선발기준에 포함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3.1.1 학생선발

□ 진단항목: 대학은 입학전형기준에 맞추어 학생모집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3.1.1-13, 2016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구성 명단<br/>           Ⅲ-3.1.1-14, 2017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구성 명단<br/>           Ⅲ-3.1.1-15, 2016년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구성 명단<br/>           Ⅲ-3.1.1-16, 2017년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구성 명단<br/>           Ⅲ-3.1.1-17,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 규정<br/>           Ⅲ-3.1.1-18,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운영 규정</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입시계획 이행, 입시활동을 관리하였음</li> <li>·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입시 담당부서 처장을 포함한 5인 이내 위원(2016년-박선태, 배명수, 김미원, 박상열, 안주영 / 2017년-박선태, 배명수, 한현지, 박상열, 정동희)으로 구성하여 대학입시제도 개발, 입학전형기본계획 심의, 입학전형별 자격기준 심의, 모집 시기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하였음</li> <li>·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입시 담당부서장을 제외한 5인 이내의 위원(2016년-이정미, 장혜경, 서명환, 양은주, 이인실 / 2017년-이정미, 안주영, 오승환, 이종운, 손명희)으로 구성하여 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정한 이행 여부 및 입시활동 중 기본계획 위반여부 확인, 입시 부적격자 등의 사항을 심의하였음</li> <li>· 각 위원회 별 위원 구성은 중임을 철저히 제한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간 공정성을 확보하였음</li> </ul> |

평가요소: 3.1.1 학생선발

진단항목: 대학은 적정 수준 이상의 신입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C ( ), N ( )   |
|----------------|---|
| 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 | Ⅲ-3.1.1-19,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최종결과 보고 공문<br>Ⅲ-3.1.1-20,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최종결과 보고 공문              |
| 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 | · 대학은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으로 2016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96%, 2017학년도 100%로 대학기관평가 인증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신입생 충원율을 유지하였음 |

□ 평가요소: 3.1.1 학생선발

□ 진단항목: 대학은 매년 신입생 선발(모집) 활동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신입생 선발(모집) 활동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3.1.1-21,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br/>           Ⅲ-3.1.1-22, 2016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보고서<br/>           Ⅲ-3.1.1-23, 2017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보고서<br/>           Ⅲ-3.1.1-24, 2015학년도 입학전형결과 평가보고서<br/>           Ⅲ-3.1.1-25, 2016학년도 입학전형결과 평가보고서</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매년 전형별 신입생 선발 관리를 위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신입생 모집계획의 공정성 여부 확인 및 신입생 선발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였음</li> <li>·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신입생 모집의 부적격 확인 및 모집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각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시공정관리위원회 위원은 중립하지 않도록 위촉·운영하였음</li> <li>· 선행학습영향평가는 신입생 모집활동 종료 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li> <li>· 차기년도 입시계획 수립은 신입생 입학전형결과 평가·분석을 통해 입학계획, 입시활동전략 분석, 신입생 입시전략을 평가하여 반영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3.1.2 학사관리 규정 및 준수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의 학위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의 질과 수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제반 규정(학사관리규정)을 갖추어 이를 공지하여 안내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3.1.2-1,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의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p> <p>Ⅲ-3.1.2-1, 학칙</p> <p>Ⅲ-3.1.2-2, 학칙 시행세칙</p> <p>Ⅲ-3.1.2-3, 교직원운영 규정</p> <p>Ⅲ-3.1.2-4, 학사관리 관련 규정</p> <p>Ⅲ-3.1.2-5, 대학 홈페이지 학사 규정 공지</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교직원운영규정 및 학사관리 관련 규정을 두어 학적, 성적, 학점인정, 학위수여 등의 학사관리 규정이 있음</li> <li>· 대학은 학위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의 질과 수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칙, 학칙 시행세칙, 학사 관련 제반 규정을 갖추어 충분성을 확보하였음</li> <li>·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 안내를 통하여 학사 관련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달하고, 대학 홈페이지, 사이버캠퍼스 등을 통해 학칙, 학칙 시행세칙, 학사 관련 제반 규정을 공지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3.1.3 수업관리

□ 진단항목: 학생의 출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평가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C ( ), N ( )                             |
|---|---|
| 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                                  | Ⅲ-3.1.3-1,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의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   | Ⅲ-3.1.3-1, 학칙 제35조(출석의무)                        |
|   | Ⅲ-3.1.3-2, 학칙 제36조(출석인정)                        |
|   | Ⅲ-3.1.3-3, 학칙 제40조(성적)                          |
|   | Ⅲ-3.1.3-4, 학칙 제41조(성적취소)                        |
|   | Ⅲ-3.1.3-5, 학칙 시행세칙 제7조(출석인정)                    |
|   | Ⅲ-3.1.3-6, 학칙 시행세칙 제15조(성적산출)                   |
|   | Ⅲ-3.1.3-7, 학칙 시행세칙 제16조(평점산출)                   |
|   | Ⅲ-3.1.3-8, 학칙 시행세칙 제17조(성적의 취소)                 |
|   | Ⅲ-3.1.3-9, 학칙 시행세칙 제20조(성적산출근거관리)               |
|   | Ⅲ-3.1.3-10, 학사운영 규정 제14조(출석)                    |
|   | Ⅲ-3.1.3-11, 학사운영 규정 제18조(성적)                    |
|   | Ⅲ-3.1.3-12, 학사운영 규정 제20조(성적산출근거관리)              |
|   | Ⅲ-3.1.3-13, 수업관리 지침(2. 출결 관리)                   |
|   | Ⅲ-3.1.3-14, 출결관리 지침                             |
|   | Ⅲ-3.1.3-15, 2016학년도 1학기 출석부 및 성적 전산출력물 제출 안내 공문 |
|   | Ⅲ-3.1.3-16, 2016학년도 2학기 출석부 및 성적 전산출력물 제출 안내 공문 |
|   | Ⅲ-3.1.3-17, 2017학년도 1학기 출석부 및 성적 전산출력물 제출 안내 공문 |
| Ⅲ-3.1.3-18, 2017학년도 2학기 출석부 및 성적 전산출력물 제출 안내 공문 |   |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3.1.3-19, 2016학년도 출석부<br/>Ⅲ-3.1.3-20, 2017학년도 출석부<br/>Ⅲ-3.1.3-21, 2016학년도 강의계획서<br/>Ⅲ-3.1.3-22, 2017학년도 강의계획서</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해 출석 및 성적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저히 관리하였음</li> <li>· 제정된 학칙, 학칙 시행세칙,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강의계획서 출결점수를 명시하고 매 수업 출석확인 결과를 출석부에 기재하였음</li> <li>· 학기말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을 통해 점검함으로써 출결관리 규정을 준수하였음(학사지원처-1286, 2016.07.13.), (학사지원처-361, 2016.12.27.), (학사지원처-593, 2017.07.05.), (학사지원처-1257, 2017.12.19.)</li> <li>· 부정출결 방지를 위해 학과별 재학생 사진목록을 제작·배부하여 출결관리를 하고 있으며, 총 수업시간의 1/4 이상 결석 시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하고, 유고결석 시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였음(학사지원처-2345, 2016.02.29.), (학사지원처-198, 2017.03. 27.)</li> </ul> |



□ 평가요소: 3.1.3 수업관리

□ 진단항목: 수업운영(휴·보강, 수업일수 준수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b>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b>                | Ⅲ-3.1.3-23, 학칙 제9조(수업일수)              |
|                                       | Ⅲ-3.1.3-24, 학칙 제31조(수업)               |
|                                       | Ⅲ-3.1.3-25, 학칙 제32조(집중수업)             |
|                                       | Ⅲ-3.1.3-26, 학칙 제33조(교수시간)             |
|                                       | Ⅲ-3.1.3-27, 학칙 시행세칙 제3조(계절수업)         |
|                                       | Ⅲ-3.1.3-28, 학칙 시행세칙 제6조(수업운영방법)       |
|                                       | Ⅲ-3.1.3-29, 학칙 시행세칙 제39조(보강 및 대강)     |
|                                       | Ⅲ-3.1.3-30, 학칙 시행세칙 제40조(결강)          |
|                                       | Ⅲ-3.1.3-31,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2조(교육업적)      |
|                                       | Ⅲ-3.1.3-32, 학사운영 규정 제10조(수업)          |
|                                       | Ⅲ-3.1.3-33, 강의평가 규정                   |
|                                       | Ⅲ-3.1.3-34, 휴·보강 운영 규정                |
|                                       | Ⅲ-3.1.3-35, 수업관리 지침(4. 휴강 및 보강 관리)    |
|                                       | Ⅲ-3.1.3-36, 2016학년도 1학기 학사관리 철저 통보 공문 |
|                                       | Ⅲ-3.1.3-37, 2016학년도 2학기 학사관리 철저 통보 공문 |
|                                       | Ⅲ-3.1.3-38, 2017학년도 1학기 학사관리 철저 통보 공문 |
|                                       | Ⅲ-3.1.3-39, 2017학년도 2학기 학사관리 철저 통보 공문 |
|                                       | Ⅲ-3.1.3-40, 2016학년도 학사일정 공지 공문        |
|                                       | Ⅲ-3.1.3-41, 2017학년도 학사일정 공지 공문        |
|                                       | Ⅲ-3.1.3-42, 2016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점검 결과 공문 |
|                                       | Ⅲ-3.1.3-43, 2016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점검 결과 공문 |
| Ⅲ-3.1.3-44, 2017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점검 결과 공문 |                                       |
| Ⅲ-3.1.3-45, 2017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점검 결과 공문 |                                       |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3.1.3-46, 2016학년도 1학기 휴·보강 및 결강 결과 보고 공문<br/> Ⅲ-3.1.3-47, 2016학년도 2학기 휴·보강 및 결강 결과 보고 공문<br/> Ⅲ-3.1.3-48, 2017학년도 1학기 휴·보강 및 결강 결과 보고 공문<br/> Ⅲ-3.1.3-49, 2017학년도 2학기 휴·보강 및 결강 결과 보고 공문<br/> Ⅲ-3.1.3-50, 2016학년도 수업운영 현황 분석 보고 공문<br/> Ⅲ-3.1.3-51, 2017학년도 수업운영 현황 분석 보고 공문<br/> Ⅲ-3.1.3-52, 2016학년도 출석부<br/> Ⅲ-3.1.3-53, 2017학년도 출석부</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칙 시행세칙, 휴·보강운영 규정 등에 휴·보강 및 수업일수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엄정한 수업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업 일수를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학점 당 이수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운영하고, 강의평가 문항에 수업 시간 준수 관련 항목을 포함하여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였음(학사지원처-816, 2016.05.02.), (학사지원처-56, 2016.09.26.), (학사지원처-569, 2017.02.24.), (학사지원처-1008, 2017.10.11.)</li> <li>· 학생의견을 반영하는 휴강 및 보강관리체계에 따라 사전에 학생들의 보강일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학사지원처에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출석부에 휴·보강일을 반드시 기재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휴·보강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였음</li> <li>· 규정된 수업 기간 및 학점 이수 시간 준수를 위하여 학기별로 주요 학사일정을 공지(학사종합지원 I 처-2046, 2016.01.14.), (학사처-382, 2017.01.04.)하고 휴·보강계획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수업운영을 엄격하게 관리하였음(학사지원처-1135, 2016.06.15.), (학사지원처-352, 2016. 12.24.), (학사지원처-630, 2017.07.17.), (학사지원처-989, 2017.09.30.)</li> <li>· 학과에서 제출받은 휴·보강계획서와 출석부를 비교하는 다중 점검을 통해 휴·보강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업운영 현황 분석을 통하여 철저한 수업 운영을 하였음(학사지원처-1178, 2016.06.21.), (학사처-501, 2017.02.11.), (학사지원처-561, 2017.08.26.), (학사지원처-1476, 2018.02.02.)</li> </ul> |

□ 평가요소: 3.1.3 수업관리

□ 진단항목: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3.1.3-54, 학칙 제33조(교수시간)<br/>           Ⅲ-3.1.3-55, 학칙 시행세칙 제38조(과목 담당 교수의 시간배정)<br/>           Ⅲ-3.1.3-56, 강사료 지급 규정<br/>           Ⅲ-3.1.3-57, 강의시수표 및 시간표 작성지침(2016, 2017)<br/>           Ⅲ-3.1.3-58, 2016학년도 강사료 지급 계획안 공문<br/>           Ⅲ-3.1.3-59, 2017학년도 강사료 지급 계획안 공문<br/>           Ⅲ-3.1.3-60, 2016년 4월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지급 요청 공문<br/>           Ⅲ-3.1.3-61, 2016년 10월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지급 요청 공문<br/>           Ⅲ-3.1.3-62, 2017년 4월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지급 요청 공문<br/>           Ⅲ-3.1.3-63, 2017년 10월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지급 요청 공문</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교원의 교수시간)에 의거하여 주당 수업시간과 관련된 학칙 제33조(교수시간), 학칙 시행세칙 제38조(과목 담당 교수의 시간배정), 강사료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을 9시간으로 제시하였음</li> <li>· 학칙 제33조(교수시간)에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명시하고, 학기 초 강의시수표 및 시간표 작성 지침을 배부하여 과다 수업시간을 지양함(학사종합지원 I 처-2152, 2016.02.02.), (학사지원처-1325, 2016.07.18.), (학사처-573, 2017.02.24.), (학사지원처-704, 2017.08.10.)</li> <li>· 전임교원이 책임시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시수에 대하여 시수 산정을 하여 초과강사료를 지급함(학사지원처-753, 2016.04.20.), (학사지원처-147, 2016.10.24.), (학사지원처-341, 2017.04.21.), (학사지원처-1076, 2017.10.23.)</li> </ul> |

평가요소: 3.1.4 재학생 충원

진단항목: 대학은 적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3.1.4-1, 4-라. 학생 충원 현황<br/>Ⅲ-3.1.4-2, 4-마. 재적 학생 현황</p> <p>Ⅲ-3.1.4-1, 2016년도 재학생 현황자료<br/>Ⅲ-3.1.4-2, 2017년도 재학생 현황자료</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생 충원율 현황</li> <li>- 2016학년도: 학생정원 1,427명, 재학생 1,253명(87.8%)</li> <li>- 2017학년도: 학생정원 1,363명, 재학생 1,222명(89.7%)</li> </ul> |

□ 평가요소: 3.1.4 재학생 충원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의 재학생 충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3.1.4-3, 2016년도 충원을 제고 자료<br/>           Ⅲ-3.1.4-4, 2017년도 충원을 제고 자료<br/>           Ⅲ-3.1.4-5, 2016년도 상담 일지<br/>           Ⅲ-3.1.4-6, 2017년도 상담 일지<br/>           Ⅲ-3.1.4-7, 2016년도 상담 및 교육 관련 자료<br/>           Ⅲ-3.1.4-8, 2017년도 상담 및 교육 관련 자료</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충원을 유지 및 학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학과상담, 전과, 재입학 등 학과 단위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학과별 상담요청 공문 및 상담일지를 배부하였음(학사지원처-432, 2017.01.14.), (학사지원처-702, 2017.08.10.), (학사지원처-1345, 2016.07.20.), (학사지원처-426, 2017.01.14.), (학사지원처-708, 2017.08.10.), (학사지원처-741, 2017.08.18.)</li> <li>· 학생상담센터 상담(학생상담센터-145, 2017.08.29.), (학사지원처-873, 2017.09.11.),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능력 향상 특강(교수학습지원센터-20, 2017.03.29.), (교수학습지원센터-159, 2017.06.14.), (교수학습지원센터-205, 2017.09.02.)을 통하여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음</li> <li>· 대학은 재학생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하여 학업부적응자, 학업 저성취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및 특강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만족도를 높였음(학사지원처-1357, 2016.07.22.), (학사지원처-414, 2017.01.11.), (학사지원처-701, 2017.08.10.), (학사지원처-1463, 2018.01.31.)</li> </ul> |

□ 평가요소: 3.1.5 학업성취도 평가

□ 진단항목: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제시된 성취수준과 내용, 평가기준, 방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3.1.5-1,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의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br/>Ⅲ-3.1.5-2, 2-가. 성적평가 결과</p> <p>Ⅲ-3.1.5-1, 학칙 제38조(시험)<br/>Ⅲ-3.1.5-2, 학칙 제40조(성적)<br/>Ⅲ-3.1.5-3, 학칙 시행세칙 제15조(성적산출)<br/>Ⅲ-3.1.5-4, 학사운영 규정 제10조(수업)<br/>Ⅲ-3.1.5-5, 학사운영 규정 제16조(시험)<br/>Ⅲ-3.1.5-6, 학사운영 규정 제18조(성적)<br/>Ⅲ-3.1.5-7, NCS직무능력성취도 평가 규정 제5조(평가방법)<br/>Ⅲ-3.1.5-8, NCS직무능력성취도 평가 규정 제6조(평가도구 개발 및 운영)<br/>Ⅲ-3.1.5-9, 수업관리 지침(1. 강의계획서 관리)<br/>Ⅲ-3.1.5-10, 수업관리 지침(5. 성적평가 관리)<br/>Ⅲ-3.1.5-11, 학사관리 지침 제2조(수업계획 및 운영)<br/>Ⅲ-3.1.5-12, 학사관리 지침 제7조(정기시험)<br/>Ⅲ-3.1.5-13, 일반교과목 강의계획서 화면 캡처<br/>Ⅲ-3.1.5-14, NCS운영관리시스템 강의계획서 화면 캡처<br/>Ⅲ-3.1.5-15, NCS(현장중심)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br/>Ⅲ-3.1.5-16, NCS기반(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결과 보고서<br/>Ⅲ-3.1.5-17, 평가관련자료(진단평가, 직무능력평가, 평가결과서)</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강의계획서에 각 과목의 성취수준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명시하여 이를 근거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였음</li> <li>· 성취수준의 평가방법은 교과목의 학습목표와 연관성을 가지며, 평가방법의 세부내용과 평가의 세부기준을 강의계획서에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공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음</li> <li>· 학과 및 과목 특성에 따른 평가방법을 고려한 성적 부여기준을 제시하였음</li> <li>·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칙과 학사에 관한 내규에 명시한 성적분포 비율지침과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음</li> </ul>   |

평가요소: 3.1.5 학업성취도 평가

진단항목: 대학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적평가, 학점 부여 관련 규정을 갖추어 준수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b>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b> | <p>Ⅲ-3.1.5-18, 학칙 제38조(시험)</p> <p>Ⅲ-3.1.5-19, 학칙 제40조(성적)</p> <p>Ⅲ-3.1.5-20, 학칙 제43조(졸업 및 수료)</p> <p>Ⅲ-3.1.5-21, 학칙 시행세칙 제15조(성적산출)</p> <p>Ⅲ-3.1.5-22, 학칙 시행세칙 제16조(평점산출)</p> <p>Ⅲ-3.1.5-23, 학사운영 규정 제16조(시험)</p> <p>Ⅲ-3.1.5-24, 학사운영 규정 제18조(성적)</p> <p>Ⅲ-3.1.5-25, 학사운영 규정 제21조(졸업)</p> <p>Ⅲ-3.1.5-26, NCS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규정 제5조(평가방법)</p> <p>Ⅲ-3.1.5-27, NCS 직무능력성취도 평가 규정 제6조(평가도구 개발 및 운영)</p> <p>Ⅲ-3.1.5-28, 수업관리 지침(1. 강의계획서 관리)</p> <p>Ⅲ-3.1.5-29, 수업관리 지침(5. 성적평가 관리)</p> <p>Ⅲ-3.1.5-30, 학사관리 지침 제2조(수업계획 및 운영)</p> <p>Ⅲ-3.1.5-31, 학사관리 지침 제7조(정기시험)</p> <p>Ⅲ-3.1.5-32, 2016학년도 수업운영현황 보고서</p> <p>Ⅲ-3.1.5-33, 2017학년도 수업운영현황 보고서</p> <p>Ⅲ-3.1.5-34, 2016학년도 졸업사정위원회 결재 공문</p> <p>Ⅲ-3.1.5-35, 2017학년도 졸업사정위원회 결재 공문</p> <p>Ⅲ-3.1.5-36, 출석부(2016, 2017)</p> <p>Ⅲ-3.1.5-37, 2016년 성적분포 현황보고 공문</p> <p>Ⅲ-3.1.5-38, 2017년 성적분포 현황보고 공문</p> |

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

- 대학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적평가, 학점부여를 위해 학칙, 학칙 시행세칙, 학사운영 규정, NCS직무능력성취도 평가 규정, 수업관리지침, 졸업 규정 등의 제반 규정을 갖추어 준수하였음
- 대학은 학칙 제40조(성적)에 근거하여 학생의 성적평가는 학업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상대평가로 성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학칙 시행세칙 제15조(성적산출)에 근거하여 A학점 비율을 30%이하, B학점 비율은 70%이하, C학점 비율은 30%이상으로 적용하였음
- 학업성취도 평가는 성적처리지침 및 NCS능력단위 기반 교과목 평가 배점기준을 근거하여 성적을 평가하였음
- 학칙 시행세칙 제15조(성적산출)에 따라 출석성적, 발표, 토론, 과제, 수업기여도, 학습태도, 참여도, 중간고사(수시고사) 성적, 기말고사(필수고사) 성적, 기타 등을 종합평가 하였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 평가근거로 이론과목과 실기 및 실습과목의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을 강의계획서에 제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적평가를 기하였음
- 학칙에 의해 졸업인정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졸업사정위원회를 거쳐 졸업자를 확정하였음(학사지원처-469, 2017.02.01.), (학사지원처-754, 2017.08.21.), (학사지원처-1392, 2018.01.22.), (학사지원처-527, 2018.08.13.)



□ 평가요소: 3.1.5 학업성취도 평가

□ 진단항목: 대학의 성적평가는 대·내외적으로 평가의 신뢰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3.1.5-39, 학칙 제40조(성적)<br/>           Ⅲ-3.1.5-40, 학칙 시행세칙 제15조(성적산출)<br/>           Ⅲ-3.1.5-41, 학칙 시행세칙 제16조(평점산출)<br/>           Ⅲ-3.1.5-42, 학칙 시행세칙 제19조(성적이의 신청 및 성적제출)<br/>           Ⅲ-3.1.5-43, 수업관리 지침(5. 성적평가 관리)<br/>           Ⅲ-3.1.5-44, 학사운영 규정 제18조(성적)<br/>           Ⅲ-3.1.5-45, 2015학년도 1학기 절대평가 사유 회신 요청 공문<br/>           Ⅲ-3.1.5-46, 2015학년도 2학기 절대평가 사유 회신 요청 공문<br/>           Ⅲ-3.1.5-47, 2016학년도 1학기 절대평가 사유 회신 요청 공문<br/>           Ⅲ-3.1.5-48, 2016학년도 2학기 절대평가 사유 회신 요청 공문<br/>           Ⅲ-3.1.5-49, 2016학년도 1학기 절대평가 A학점 분포비율 40%제한 안내 공문<br/>           Ⅲ-3.1.5-50, 2016학년도 2학기 절대평가 A학점 분포비율 40%제한 안내 공문<br/>           Ⅲ-3.1.5-51, 2015년 대학정보공시자료 2-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분포)<br/>           Ⅲ-3.1.5-52, 2016년 대학정보공시자료 2-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분포)<br/>           Ⅲ-3.1.5-53, 2015학년도 1학기 과목별 성적분포 현황 공문<br/>           Ⅲ-3.1.5-54, 2015학년도 2학기 과목별 성적분포 현황 공문<br/>           Ⅲ-3.1.5-55, 2016학년도 1학기 과목별 성적분포 현황 공문<br/>           Ⅲ-3.1.5-56, 2016학년도 2학기 과목별 성적분포 현황 공문</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평가 적용 예외과목 제외, 2016년(2015년 성적기준) A학점 비율 27%, 2017년(2016년 성적기준) A학점 비율 26%로 충족하였음</li> <li>· 상대평가 예외과목(학칙 시행세칙 제15조(성적산출) 4항)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함으로써 대부분의 교과목을 상대평가로 공정하게 평가하였음(학사지원처-1006, 2016.05.23.), (학사처-342, 2016.12.22.)</li> <li>· 대학은 과도한 학점이 부여되지 않도록 합리적 성적 부여를 위하여 성적평가, 성적산출, 성적인정 및 취소, 이의신청 및 정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3.1.5 학업성취도 평가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에게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이의 제기 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3.1.5-57, 학칙 제40조(성적)<br/>           Ⅲ-3.1.5-58, 학칙 시행세칙 제19조(성적이의 신청 및 성적제출)<br/>           Ⅲ-3.1.5-59, 학칙 시행세칙 제22조(성적정정)<br/>           Ⅲ-3.1.5-60, 수업관리 지침(5. 성적평가 관리)<br/>           Ⅲ-3.1.5-61, 대학 홈페이지 성적이의 공지 자료<br/>           Ⅲ-3.1.5-62, 대학 홈페이지 성적이의 신청 화면 캡처</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에 관한 학칙과 내규 학칙 제40조, 학칙 시행세칙 제19조(성적이의 신청 및 성적제출), 제22조(성적정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성적평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li> <li>· 매 학기말(6월, 12월)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기간을 대학 홈페이지 및 사이버캠퍼스에 공지하고 있으며, 강의평가 실시 후 자신의 성적을 조회하고 성적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였음</li> <li>· 성적이의 제기 및 처리의 절차를 학칙에 명시하고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3.2.1 교수학습 지원 체제

□ 진단항목: 대학은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및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3.2.1-1, 교수학습지원센터 부서운영계획서(2016)<br/>           Ⅲ-3.2.1-2, 교수학습지원센터 부서운영계획서(2017)<br/>           Ⅲ-3.2.1-3,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br/>           Ⅲ-3.2.1-4, 학업 부적응자를 위한 특강 요청 공문<br/>           Ⅲ-3.2.1-5, 2017학년도 성적향상을 위한 학습지도 간담회 공문<br/>           Ⅲ-3.2.1-6, 2017학년도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동연구를 위한 계획 공문</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지원 조직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2010년 신설)하고 있으며, 담당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교수학습지원센터장(안주영, 차상희), 부센터장(오승환), 연구위원(강유정, 문은주), 담당직원(정복임, 사공혁)</li> <li>- 2017년: 교수학습지원센터장(손명희), 부센터장(김정훈), 연구위원(차상희, 문은주), 담당직원(정복임, 사공혁)</li> </ul> </li> <li>· 부서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전공 또는 자격증 보유자를 두고, 재교육을 실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차상희(교육학 전공), 오승환(평생교육학 전공), 강유정(교육학 전공), 문은주(교육학 전공), 정복임(평생교육학 전공), 사공혁(기계공학 전공)</li> <li>- 2017년: 손명희(사회복지 전공), 김정훈(교육공학 전공), 차상희(교육학 전공), 문은주(교육학 전공), 정복임(평생교육학 전공), 사공혁(기계공학 전공)</li> </ul> </li> <li>- 재교육 실적: 전문대협 『전문대학 교육포럼』 참석(2016.12.09), 교수학습발전협의회 세미나 참석(2017.09.19.), 『자기주도학습 코치상담사』 자격증 취득(2018.02.06.), 『성인학습상담사』 자격증 취득(2018.02.09.), 한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벤치마킹(2017.11.09)</li> <li>·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지원, 학습지원, E-learning지원을 위하여 기획실(교원업적평가 기준 설계 연계), 학사지원처(학업 저성취자 교육 연계), 학생지원처(E-Learning 콘텐츠 제작 연계), 학생상담센터(학업 저성취자 상담 연계), 취·창업지원센터(진로검사 업무 연계)등 타 부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3.2.1 교수학습 지원 체제

□ 진단항목: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 및 학생의 학습목표를 달성을 위하여 교수 및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3.2.1-7, 교수학습지원센터 부서운영계획서(2016)<br/>           Ⅲ-3.2.1-8, 교수학습지원센터 부서운영계획서(2017)<br/>           Ⅲ-3.2.1-9, 성덕대학교 학생 지원을 위한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실시 공문(2016)<br/>           Ⅲ-3.2.1-10, 성덕대학교 학생 지원을 위한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실시 공문(2017)<br/>           Ⅲ-3.2.1-11, 교수지원 프로그램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관련 공문<br/>           Ⅲ-3.2.1-12, 교수학습지원센터 자체평가 및 점검 결과 보고서(2016)<br/>           Ⅲ-3.2.1-13, 교수학습지원센터 자체평가 및 점검 결과 보고서(2017)<br/>           Ⅲ-3.2.1-14,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2016)<br/>           Ⅲ-3.2.1-15,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2017)<br/>           Ⅲ-3.2.1-16, 교수학습프로그램 재정지원 실적 공문(2016)<br/>           Ⅲ-3.2.1-17, 교수학습프로그램 재정지원 실적 공문(2017)<br/>           Ⅲ-3.2.1-18, 교수학습지원센터 기자재 사용 절차 안내문<br/>           Ⅲ-3.2.1-19, 교수지원을 위한 기자재 이용 신청서<br/>           Ⅲ-3.2.1-20, 교수지원을 위한 자료이용 안내 공문</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자체평가(2016년: 2017.02.10, 2017년: 2018.02.14) 및 프로그램 수요만족도 조사(2016년: 2017.01.12, 2017년: 2017.10.12.)를 반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음(2016년 부서운영계획서, 2017년 부서운영계획서)</li> <li>· 교수학습지원을 통한 위한 스튜디오 3개, 아이패드 5대, 촬영용 카메라 7대를 갖추고 있으며, 전자칠판 1대, 헤드폰 1개를 추가 구매하였음(교수학습지원센터-2, 2016.03.03, 교수학습지원센터-21, 2016.04.25)</li> <li>· 장비이용 시 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자재를 대여하였음(2016 기자재 이용신청서, 2017 기자재 이용신청서)</li> <li>· 교직원들의 IT기기 사용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I-PAD 사용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음(교수학습지원센터-251, 2017.11.01.)</li> <li>· 2016년 교수지원 실적: 플립드 러닝 발표회 외 총 1건, 총 1,199천원 지원</li> <li>· 2016년 학생지원 실적: 멘토링 프로그램 외 총 22건, 총 11,160천원 지원</li> <li>· 2017년 교수지원 실적: 교수법 발표회 외 총 3건, 총 4,035천원 지원</li> <li>· 2017년 학생지원 실적: 신입생 길라잡이 외 총 25건, 총 13,446천원 지원</li> </ul>               |

□ 평가요소: 3.2.2 교수학습 지원활동 평가 및 개선

□ 평가항목: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강좌에 대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하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3.2.2-1, 강의평가 규정<br/>Ⅲ-3.2.2-2, 강의평가 결과 관련 내부 보고 공문(2016)<br/>Ⅲ-3.2.2-3, 강의평가 결과 관련 내부 보고 공문(2017)<br/>Ⅲ-3.2.2-4, 강의평가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화면 캡처</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 및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강의평가 규정을 수립하고, 모든 강좌에 대해 매학기 종료 후 강의평가를 실시하였음(총 4회)</li> <li>· 강의평가 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a href="http://sub.sdc.ac.kr/sdc/index.asp">http://sub.sdc.ac.kr/sdc/index.asp</a>)을 통해 해당 교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음</li> <li>· 강의평가에 대한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홈페이지(<a href="http://www.sdc.ac.kr">www.sdc.ac.kr</a>)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과목별 강의 평가를 실시한 후, 개인의 과목별 성적열람이 가능하도록 진행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3.2.2 교수학습 지원활동 평가 및 개선

□ 평가항목: 대학은 강의평가 결과를 교육의 질 및 교수의 강의능력 제고에 활용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3.2.2-5, 강의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2016)<br/>           Ⅲ-3.2.2-6, 강의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2017)<br/>           Ⅲ-3.2.2-7, 강의평가 결과 관련 포상 지원 공문(2016)<br/>           Ⅲ-3.2.2-8, 강의평가 결과 관련 포상 지원 공문(2017)<br/>           Ⅲ-3.2.2-9,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교수역량 강화 특강 공문(2016)<br/>           Ⅲ-3.2.2-10, 강의평가 결과에 따른 교수역량 강화 특강 공문(2017)<br/>           Ⅲ-3.2.2-11, 교수법 발표회 관련 계획보고 공문<br/>           Ⅲ-3.2.2-12, 교수법 발표회 관련 우수교원 포상 지원 공문</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강의평가 규정에 근거하여 매학기 강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2016 강의결과 분석보고서, 2017 강의결과 분석보고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수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li> <li>· 우수강의 교수에게 지속적인 강의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포상금 또는 지원물품을 제공(교수학습지원센터-167, 2016년 총 10명 총 549천원, 교수학습지원센터-467, 2017년 총 10명 총 868천원)하였음</li> <li>· 전체교원의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특강교육을 실시하였음(2017.02.28. 교수학습과 강의전략 대응 특강, 총 500천원, 2018.02.21. 효과적인 교수기법 특강, 총 504천원 지원)</li> <li>· 교수법의 개발·공유와 강의 질 개선을 위하여 2017년 제15회 교수법 발표회를 진행하였음(교수학습지원센터-231, 2017.10.13)</li> <li>· 최근 교육트렌드를 반영한 최신 IT기기 교육(2017.11.01 플립드 러닝 실무 향상 교육 총 695천원)을 실시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3.2.2 교수학습 지원활동 평가 및 개선

□ 평가항목: 대학은 대학의 교수·학습지원 활동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3.2.2-13, 성덕대학교 학생 지원을 위한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실시 공문(2016)<br/>           Ⅲ-3.2.2-14, 성덕대학교 학생 지원을 위한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실시 공문(2017)<br/>           Ⅲ-3.2.2-15, 성덕대학교 신입생 의식 실태조사 보고서(2016)<br/>           Ⅲ-3.2.2-16, 성덕대학교 신입생 의식 실태조사 보고서(2017)<br/>           Ⅲ-3.2.2-17, 교수학습지원센터 부서운영결과 보고서(2016)<br/>           Ⅲ-3.2.2-18, 교수학습지원센터 부서운영결과 보고서(2017)<br/>           Ⅲ-3.2.2-19, 교수지원 프로그램 수요 및 만족도 조사보고서<br/>           Ⅲ-3.2.2-20, 학습프로그램별 만족도조사 결과 공문<br/>           Ⅲ-3.2.2-21, 홍보리플릿 제작 관련 공문<br/>           Ⅲ-3.2.2-22,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2016)<br/>           Ⅲ-3.2.2-23,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2017)<br/>           Ⅲ-3.2.2-24, 교수학습지원센터 부서운영계획서(2016)<br/>           Ⅲ-3.2.2-25, 교수학습지원센터 부서운영계획서(2017)</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학습지원 계획수립 시 운영프로그램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수학습지원 활동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였음</li> <li>· 2016학년도 신입생 의식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학습 장애요인 개선』 요구 및 『기초실력 부족(33.7%) 응답』 요구를 반영하여 2017학년도 기초학습능력평가를 실시하였음(교수학습지원센터-22, 2017년 3월 참가자 언어 521명, 수리 524명)</li> <li>· 2016학년도 신입생 의식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속학과 적응 도움』 요구 및 『친구와 선배의 친밀한 관계(30.7%) 응답』 요구를 반영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교수학습지원센터-122, 2016년 멘토링 참가자 총 20명, 643천원 지원)</li> </ul>   |

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

- 2016학년도 신입생 의식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강과목 선택기준 도움』 요구 및 『취직에 도움(60.6%) 응답』 요구를 반영하여 전공직무/자기계발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교수학습지원센터-47, 2016년 특강 프로그램 참가자 총 147명, 총 300천원 지원)
- 2017-1학기 플립드 러닝 운영 만족도 조사(2017.06 조사 실시) 결과(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외 2과목 총 212명 조사 참여) 수업방식에 만족도가 “그렇다” 이상 응답률이 87.2%로 전년대비 약 4.8% 증가함
- 2016학년도 자체평가 성과분석(자체평가표 채점)결과: 프로그램 홍보, 학생 참여도 항목점수가 낮음  
⇒ 개선점: 1) 2017학년도 신입생 길라잡이 프로그램 실시(홍보강화를 위한 부서별 통합자료 배부, 2017.04.18)  
2) 2017학년도 선후배간 관계 개선요구(멘토링 프로그램 3학기 연속 시행, 2016-2학기 2016.11.14.~12.10 총 20명, 2017-1학기 2017.04.03.~05.13 총 12명, 2017-2학기 2017.10.28.~11.18 총 16명 참여)  
3) 2017학년도 교수의 강의방식 개선(플립드 러닝 7개 교과목 운영)
  - 1학기: 유아수학교육, 유아음악교육,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2학기: 사회복지실천론, 임상사례세미나, 응급의학총론, 장애인복지론



## 기준 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 평가요소: 4.1.1 산학협력활동

□ 진단항목: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이나 제도와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4.1.1-1, 산학협력 운영 규정<br/>           Ⅲ-4.1.1-2,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br/>           Ⅲ-4.1.1-3, 산학협력 협약 체결 규정<br/>           Ⅲ-4.1.1-4, 산학협력운영위원회 규정<br/>           Ⅲ-4.1.1-5,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 규정<br/>           Ⅲ-4.1.1-6,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br/>           Ⅲ-4.1.1-7, 교원인사규정<br/>           Ⅲ-4.1.1-8, 교원업적평가규정<br/>           Ⅲ-4.1.1-9, 교원 산업체 연수 규정<br/>           Ⅲ-4.1.1-10, 연구비 규정<br/>           Ⅲ-4.1.1-11, 산학협력처 및 산학협력단 인사발령 공문(2016, 2017)<br/>           Ⅲ-4.1.1-12, 산학협력처 및 산학협력단 업무 분장표(2016, 2017)<br/>           Ⅲ-4.1.1-13, 성덕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서(2016)<br/>           Ⅲ-4.1.1-14, 산학협력처 부서 운영 계획서(2016, 2017)<br/>           Ⅲ-4.1.1-15,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 공문(2016, 2017)<br/>           Ⅲ-4.1.1-16, 교원 산업체 연수 운영 공문(2016, 2017)<br/>           Ⅲ-4.1.1-17, 교원 산학협력 역량강화 연수 운영 공문(2016, 2017)<br/>           Ⅲ-4.1.1-18, 산학협력 우수교원 포상 공문(2016)<br/>           Ⅲ-4.1.1-19,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자료</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처 운영 규정,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산학협력 협약 체결 규정, 산학협력운영위원회 규정,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 규정,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li> <li>· 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처(처장 박선태, 팀장 최은아, 담당 김은전), 산학협력단(단장 윤지현, 부단장 배명수, 과장 김재현)이 조직되어 있으며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li> <li>· 산학협력처 운영 규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연간 산학협력처 부서 운영 계획서(2016.02.27., 2017.02.24.)를 수립하여 산학협력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매년 평가·환류하고 있음</li> <li>· 교원인사규정 및 산학협력중점교원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5명, 2017년 7명의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임용하였음</li> <li>· 교원 산업체 연수 규정, 연구비 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하여 교원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교원 산업체 연수(2016년 7명, 2017년 11명), 교원 산학협력 역량강화 연수(2016년 3회, 2017년 2회), 산학협력 우수교원 포상(2016년 1명)을 시행하였음</li> <li>·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영천시, 의성군,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경북일자리사관학교, 한국마사회)</li> </ul>  |

평가요소: 4.1.1 산학협력활동

진단항목: 대학은 연간 산학협력활동 계획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4.1.1-20, 산학협력처 부서 운영 계획서(2016, 2017)<br/>           Ⅲ-4.1.1-21, 산학협력 체결 현황(2016, 2017)<br/>           Ⅲ-4.1.1-22, 산업체 현장학습 운영 공문(2016, 2017)<br/>           Ⅲ-4.1.1-23, 안경광학과 및 유아교육과 주문식 교육 교재 개발 관련 자료<br/>           Ⅲ-4.1.1-24,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자료(2016, 2017)<br/>           Ⅲ-4.1.1-25, 산업체 간담회 운영 자료(2016, 2017)<br/>           Ⅲ-4.1.1-26, 재활승마복지과 학생 해외연수 운영 공문(2016, 2017)<br/>           Ⅲ-4.1.1-27, 지역사회 유관기관 산학협력 사업 운영 자료(2016, 2017)<br/>           Ⅲ-4.1.1-28, 산학협력 활동 수요조사 보고서(2017)<br/>           Ⅲ-4.1.1-29, 산업체 간담회 보고서(2016, 2017)<br/>           Ⅲ-4.1.1-30, 산업체 만족도 조사 보고서(2016, 2017)<br/>           Ⅲ-4.1.1-31, 산학협력운영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4.1.1-32, 산학협력처 자체 평가 보고서(2016, 2017)</p> |

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

- 산학협력 협약 체결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267건, 2017년 386건의 산학협력 체결이 완료되었음
- 매년 산학협력처 부서 운영 계획서에 의거하여 산학협력 활동을 운영하였음
  - 산업체 현장학습 : 2016년 4개 학과, 15개 산업체(2016.11.18.~12.04.)/2017년 6개 학과, 10개 산업체(2017.11.25.~12.10.)
  - 주문식 교육 교재 개발 : 2016년 2개 학과(안경광학과, 유아교육과)
  -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 : 2016년 5개 학과, 산업체 관계자 12명 / 2017년 4개 학과, 산업체 관계자 15명
  - 학과별 산업체 간담회 : 2016년 9개 학과 10개 산업체(2017.02.13.) / 2017년 9개 학과, 32개 산업체(2018.02.19.~02.23.)
  - 학생 해외연수 : 2016년 재활승마복지과 2명(프랑스 국립마사학교) / 2017년 재활승마복지과 2명(프랑스 국립마사학교)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가하고 있음
  - 영천시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2016년 48명, 2017년 27명)
  - 의성군 : 재활승마 프로그램(2016년 13명)
  -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 아이사랑 시력관리사업(2016년 74명, 2017년 107명), 꿈 찾기 진로캠프(2016년 190명)
  -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 재활승지도사 양성과정(2016년 15명, 2017년 16명)
  - 한국마사회 : 찾아가는 재활힐링승마(2017년 53명)
- 산학협력 활동 수요조사, 산업체 간담회, 산업체 만족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산학협력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차기년도 계획에 환류하여 반영하고 있음 (2017.02.24., 2018.02.19.)
- 2016년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지원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충원(담당 김은전)하고 기존 산학협력처에서 운영하던 취·창업 및 현장실습 지원 업무를 취·창업지원센터와 현장실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음
- 2017년에는 산업체 간담회를 학과별로 운영하여 산업체 의견 반영을 강화하였음 (2018.02.19.~02.23 / 9개 학과, 32개 산업체)

□ 평가요소: 4.1.2 취·창업 지원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의 취·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또는 지침),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4.1.2-1, 취·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br/>           Ⅲ-4.1.2-2,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규정<br/>           Ⅲ-4.1.2-3, 취업활성화위원회 운영 규정<br/>           Ⅲ-4.1.2-4, 창업활성화위원회 운영 규정<br/>           Ⅲ-4.1.2-5, 취·창업지원센터 인사발령 공문(2016, 2017)<br/>           Ⅲ-4.1.2-6, 취·창업지원센터 전담인력 자격증 취득 현황<br/>           Ⅲ-4.1.2-7, 취·창업지원센터 업무 분장표(2016, 2017)<br/>           Ⅲ-4.1.2-8, 취·창업지원센터 부서 운영 계획서(2016, 2017)<br/>           Ⅲ-4.1.2-9, 학생상담센터 학생 진로적성검사 결과 및 상담자 요청 공문(2016, 2017)<br/>           Ⅲ-4.1.2-10, 학과별 취업 전담교수 운영 공문(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취·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규정, 취업활성화위원회 운영 규정, 창업활성화위원회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li> <li>· 취·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 취·창업 지원 교육을 계획·운영하고 있으며 취업활성화위원회 및 창업활성화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평가·환류하고 있음</li> <li>· 학생 취·창업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16년 취·창업지원센터를 총장 직속 부서로 승격·신설하였으며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였음(센터장 박선태, 팀장 최은아, 담당 김연희)</li> <li>· 산학협력처(학생 취업 지원 네트워크 연계), 학생상담센터(학생 진로적성검사 결과 공유)와 협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li> <li>· 학생 취업을 제고를 위하여 학과별 취업 전담교수를 배치하여 정기적인 취업 상담, 취업 지도를 운영하였음(2016년 4회, 2017년 5회)</li> </ul> |

□ 평가요소: 4.1.2 취·창업 지원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의 취·창업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 | Ⅲ-4.1.2-11, 재학생 및 신입생 수요조사 보고서(2016, 2017)<br>Ⅲ-4.1.2-12, 산업체 수요조사 보고서(2016, 2017)<br>Ⅲ-4.1.2-13,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서(2016, 2017)<br>Ⅲ-4.1.2-14,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공문(2016, 2017)<br>Ⅲ-4.1.2-15, Holland 직업적성검사 시행 및 상담 운영 공문(2017)<br>Ⅲ-4.1.2-16, 학과별 취업상담 운영 공문(2016, 2017)<br>Ⅲ-4.1.2-17, 졸업생 학과별 목표 취업률 수립 계획서(2016, 2017)<br>Ⅲ-4.1.2-18, 창업 정규 교과목 이수학생 관련 자료(2016, 2017)<br>Ⅲ-4.1.2-19, 창업 동아리 운영 공문(2016, 2017)<br>Ⅲ-4.1.2-20, 취업활성화위원회 및 창업활성화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Ⅲ-4.1.2-21,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평가 개선 반영 현황(2016, 2017) |

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

- 매년 학생(재학생 및 신입생), 산업체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연간 취·창업 지원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재학생 수요조사 : 2016년 - 2015.12.09.~12.28.(1,331명 중 922명) / 2017년 - 2016.12.13.~12.23.(1,364명 중 1,273명)
  - 신입생 수요조사 : 2016년 - 2016.03.15.~03.19.(641명 중 603명) / 2017년 - 2017.03.13.~03.23.(677명 중 649명)
  - 산업체 수요조사 : 2016년 - 2016.02.01.~02.09.(19개 산업체) / 2017년 - 2017.01.11.~01.20.(24개 산업체)
- 학생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6년에 17개 프로그램 / 23,713천원, 2017년 25개 프로그램 / 23,412천원을 지원하였음
- 신입생 진로지도를 위하여 2017년부터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Holland 직업적성검사를 진행한 후 진로 상담을 실시하였음(2017.04.01.~04.29., 495명 참여)
- 학생 취업 준비를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2016년부터 학과별 취업 상담을 실시하여 2016년 82명, 2017년 138명이 참여하였음
- 졸업생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학과별 목표 취업률을 수립하였음(2016년 60% / 2016.01.29., 2017년 79.9% / 2017.02.28.)
-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창업 정규 교과목(기업가정신과 리더십, 창업경영)을 개설하여 2016년 529명, 2017년 1,195명이 이수하였으며 전공 연계 창업 동아리 활동에 2016년 4개 동아리 / 50명, 2017년 4개 동아리 / 45명이 참여하였음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후 만족도 조사를 필수 실시하고 취업활성화위원회 및 창업활성화위원 운영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차기년도 계획에 환류하고 반영하였음(2017.02.27., 2018.02.26.)
- 환류를 통한 개선사항으로 2016년부터 성인학습자 취·창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2016년 8개, 2017년 9개 운영하였음
- 2016년 취업캠프 운영 시 모의면접을 1일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음(2016.11.17.~11.18., 학생 30명 참여)
- 2017년에는 취·창업지원센터 홍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전담 창업교재를 개발하였음

평가요소: 4.1.3 취업률

진단항목: 대학은 적정 수준 이상의 졸업생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 | Ⅲ-4.1.3-1, 5-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2015년, 2016년, 2017년)   |
| 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 | · 졸업생 공공 DB연계 취업률은 12월 31일 기준으로 2015년 69.2%로 2014년 63.5% 대비 5.7% 상승하였고, 2016년 77.5%이며, 2017년 70.2%임 |



□ 평가요소: 4.2.1 현장실습교육 지원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 현장실습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 운영체제를 갖추고 운영·관리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4.2.1-1, 학칙<br/>           Ⅲ-4.2.1-2,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br/>           Ⅲ-4.2.1-3,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br/>           Ⅲ-4.2.1-4,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2016, 2017)<br/>           Ⅲ-4.2.1-5, 현장실습지원센터 부서 운영계획서(2016, 2017)<br/>           Ⅲ-4.2.1-6, 현장실습지원센터 업무 분장표(2016, 2017)<br/>           Ⅲ-4.2.1-7, 현장실습 운영 요청 공문(2016, 2017)<br/>           Ⅲ-4.2.1-8, 현장실습지원센터 인사발령 공문(2016, 2017)<br/>           Ⅲ-4.2.1-9, 현장실습 업무 연계 협조 요청 공문(2016, 2017)<br/>           Ⅲ-4.2.1-10, 학과별 현장실습 파견 계획서 및 대상 업체 선정 신청서(2016, 2017)<br/>           Ⅲ-4.2.1-11, 현장실습 사전교육 실시 요청 공문(2016, 2017)<br/>           Ⅲ-4.2.1-12, 현장실습 순회지도 계획서 및 평가서(2016, 2017)<br/>           Ⅲ-4.2.1-13, 현장실습 운영 결과 보고서(2016, 2017)<br/>           Ⅲ-4.2.1-14, 현장실습 예산 집행 자료(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칙,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li> <li>·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계획·운영하고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하여 현장실습을 운영함</li> <li>· 현장실습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별도 설치하였으며 전담인력(센터장 박선태, 팀장 최은아, 담당 김은전)을 배치하였음</li> <li>· 학사지원처 수업팀(현장실습 학점 부여), 학생지원처 실습팀(현장실습비 및 보험료 지원)과 협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li> <li>· 학생 현장실무 강화를 위해 2016년(9개 학과 / 재학생 수 1,332명)에 8개 학과에서 597명(44.8%)이 278개 산업체, 2017년 (10개 학과 / 재학생 수 1,364명) 8개 학과에서 700명(51.3%)이 272개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음</li> <li>· 학생 현장실습을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비, 보험비, 순회지도비로 2016년 14,790천원, 2017년 13,179천원을 지원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4.2.1 현장실습교육 지원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의 현장실습 지원계획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4.2.1-15,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br/>           Ⅲ-4.2.1-16,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br/>           Ⅲ-4.2.1-17, 현장실습 운영 요청 공문(2016, 2017)<br/>           Ⅲ-4.2.1-18, 학생 및 산업체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보고서(2016, 2017)<br/>           Ⅲ-4.2.1-19,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4.2.1-20, 현장실습 운영 결과 보고서(2016, 2017)<br/>           Ⅲ-4.2.1-21, 현장실습 사전교육 실시 요청 공문(2016, 2017)<br/>           Ⅲ-4.2.1-22,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공문(2016)<br/>           Ⅲ-4.2.1-23, 학생이력관리시스템 현장실습 운영 사용 안내 공문(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실습 교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 및 산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항목은 현장실습 만족도 제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2016.03.04., 06.23., 09.01., 12.27. / 2017.03.04., 06.21., 08.21., 12.11.)</li> <li>· 현장실습 지원계획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16조와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5조, 제10조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통해 매 학년도 말 평가 및 분석하여 개선하고 있음(2017.02.20., 2018.02.19.)</li> <li>·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학생은 2016학년도 84.1% → 87.5%, 산업체는 84.4% → 85.9%로 매년 상승하고 있음(2017.02.17., 2018.02.15.)</li> <li>· 현장실습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실습 산업체의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실습 사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고(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9조)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학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지함(2016.03.04., 06.23., 09.02., 12.27. / 2017.03.04., 06.12., 08.21., 12.11.)</li> <li>· 2017년에는 현장실습 관리를 위한 학생이력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현장실습 운영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음(2016.05.12.-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2017.08.21.-학생이력관리시스템 현장실습 운영 사용 안내)</li> </ul> |

평가요소: 4.3.1 평생교육 운영

진단항목: 대학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행정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4.3.1-1, 평생교육원 부서운영계획서(2016, 2017)<br/>           Ⅲ-4.3.1-2,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br/>           Ⅲ-4.3.1-3, 학칙<br/>           Ⅲ-4.3.1-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2장(조직) 및 3장(운영위원회)에 의거하여, 조직 구성원(평생교육원장 이정미, 담당과장 김재현 (평생교육사 2급 보유)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였음</li> <li>· 평생교육원을 설치(1998.07.)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2장 및 제3장에 의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li> </ul> |

평가요소: 4.3.1 평생교육 운영

진단항목: 대학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평가,교육 등에 관련 학과나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을 참여시키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4.3.1-5,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계획서(2016, 2017)<br/>Ⅲ-4.3.1-6, 평생교육원 참여 전임교원 이력서(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p>· 전임교원의 프로그램 참여 현황<br/>- 2016년 6개 과정: 전임교원 박선태, 이정미, 장혜경, 김미원, 강성률 교수가 참여하였음<br/>- 2017년 10개 과정: 전임교원 김미원, 장혜경, 박선태, 최영희, 배명수, 강성률, 원유나 교수가 참여하였음</p> |

평가요소: 4.3.1 평생교육 운영

진단항목: 대학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4.3.1-7, 사후관리 자체평가 점검보고서(2016, 2017)<br/>Ⅲ-4.3.1-8,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전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2016, 2017)<br/>Ⅲ-4.3.1-9,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록(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족도 및 설문조사(2016.12.17., 2017.12.16.)에서 나온 요구사항이나 미비사항 등을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2017.01.24., 2018.01.25.)에서 회의를 통해 개선, 보완하여 시행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다양한 과정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 요청 ⇒ 노인관련 자격과정, 레크레이션 및 웃음치료사 자격과정, 밸런스 테이핑 자격과정 운영</li> <li>- 2017년: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프로그램 요청 ⇒ 성덕대학교 요양보호사교육원의 일정을 공지함<br/>사이드워커 과정의 심화 프로그램 요청 ⇒ 2018년 프로그램 개설 시 반영함</li> </ul> </li> <li>· 자체결과(2017.01.23., 2018.01.22.)평가항목의 조직운영, 업무 및 규정관련, 프로그램 운영, 부서 운영, 환류체계 등의 항목에서 『C등급』 이상으로 우수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업무분장의 적절성이 부족 ⇒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한 업무의 중복성 배제</li> <li>- 2017년: 학생모집에 관한 홍보가 부족 ⇒ 학부/학과의 설문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li> </ul> </li> </ul> |

## 기준 5. 학생

□ 평가요소: 5.1.1 학생자치활동 및 안전관리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또는 지침) 등의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5.1.1-1, 학사지원처 부서운영계획서(2016)<br/>           Ⅲ-5.1.1-2, 학생지원처 부서운영계획서(2017)<br/>           Ⅲ-5.1.1-3, 총학생회 회칙<br/>           Ⅲ-5.1.1-4, 동아리 운영 규정<br/>           Ⅲ-5.1.1-5, 교육방송국 운영규정<br/>           Ⅲ-5.1.1-6, 기숙사 운영규정<br/>           Ⅲ-5.1.1-7, 장애학생 지원 규정<br/>           Ⅲ-5.1.1-8, 장학금 지급 규정<br/>           Ⅲ-5.1.1-9, 학생회 임원 선거 규정<br/>           Ⅲ-5.1.1-10, 학생상별 규정<br/>           Ⅲ-5.1.1-11, 다문화가족학생 지원규정<br/>           Ⅲ-5.1.1-12, 학생지도위원회 규정<br/>           Ⅲ-5.1.1-13, 구성원 의사소통에 관한 규정<br/>           Ⅲ-5.1.1-14,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br/>           Ⅲ-5.1.1-15,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br/>           Ⅲ-5.1.1-16, 교수학습지원센터 지원규정<br/>           Ⅲ-5.1.1-17, 학술정보센터 지원규정<br/>           Ⅲ-5.1.1-18, 보건실 운영규정<br/>           Ⅲ-5.1.1-19, 취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br/>           Ⅲ-5.1.1-20, 사회봉사 규정<br/>           Ⅲ-5.1.1-21, 학생 안전관리 및 인권침해 예방 규정</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규정을 기반으로, 학생지원조직을(학생지원처, 학생상담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술정보센터, 취·창업지원센터, 보건실)을 구성하였음</li> <li>· 전담인력은 학생지원처장 김미원, 부처장 김정훈, 학생담당 정다운, 실습담당 정복임, 전산담당 이재철, 이성형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5.1.1 학생자치활동 및 안전관리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활동 지원계획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5.1.1-22, 학사지원처 부서운영계획서(2016)<br/>           Ⅲ-5.1.1-23, 학생지원처 부서운영계획서(2017)<br/>           Ⅲ-5.1.1-24,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5.1.1-25, 기숙사 운영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5.1.1-26, 총학생회 간담회 회의록(2016, 2017)<br/>           Ⅲ-5.1.1-27,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2016, 2017)<br/>           Ⅲ-5.1.1-28, 학생활동 지원 실적 증빙자료(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2016: 04.25.~05.31., 10.03.~10.30. / 2017: 04.10.~05.10., 11.20.~2018.02.05.)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부서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 위원회 및 학생의견 수렴(학생간부 소통간담회: 2016.04.08., 2017.12.04.)을 거쳐 학생지원 정책을 운영하였음</li> <li>· 학생활동지원을 위하여 신입생 기숙사 난방유 지급, 학생증 발급용품 지원, 국가고시반 실시(필기) 시험 지원, 재학생 단체 상해보험, 국가고시반, 재학생 간식 지원 등 2016년 총 6,716천원, 2017년 총 6,222천원을 지원하였음</li> <li>· 2017.12.04. 학생간부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전자도서관 구축 필요성을 접수받아, 2017년 회계연도 4차 추가경정 시 반영하였음 그리고 2018.02. 전자도서관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도서 15,953권을 구입하였음</li> <li>· 2016.04.08. 학생간부 소통간담회를 통해 기숙사 상수도 개선 요청을 접수받아, 영천시의원 간담회 및 지역기관장 협의를 계속 진행하였음</li> <li>· 2018년 영천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총 7억원(국비 3억5천만원, 도비 4천5백만원, 시비 3억5백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 시설완공 예정으로 학생서비스 요청을 개선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5.1.1 학생자치활동 및 안전관리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행사 등에서의 학생안전을 위한 규정(또는 지침) 등의 운영체제를 갖추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5.1.1-29, 학생 안전관리 및 인권침해 예방 규정<br/>           Ⅲ-5.1.1-30, 학사지원처 부서운영계획서(2016)<br/>           Ⅲ-5.1.1-31, 학생지원처 부서운영계획서(2017)<br/>           Ⅲ-5.1.1-32, 집회 및 시설물 승인 신청서(2016, 2017)<br/>           Ⅲ-5.1.1-33, 집회(행사) 결과 보고서(2016, 2017)<br/>           Ⅲ-5.1.1-34, 학생집단활동 연대책임 확인서<br/>           Ⅲ-5.1.1-35, 학과별 안전교육 실시 관련 공문요청 및 회신 공문<br/>           Ⅲ-5.1.1-36, 교직원 안전교육 계획 보고 공문(2016, 2017)<br/>           Ⅲ-5.1.1-37, 소방훈련 교육 관련 자료</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안전관리 및 인권침해 예방 규정과 교육부의 『집단연수 운영안전 확보 매뉴얼』을 반영하여 학과 및 부서를 통해서 안전지도를 운영하였음(학사지원처-20, 2016.03.04., 학생지원처-121, 2017.03.20.)</li> <li>· 2017년 교직원 안전관리 특강(2018.02.12)실시 및 2016년 소방훈련 교육(2016.05.12.), 2017년 소방훈련 교육(2017.06.03.)을 실시하였음</li> <li>· 매년 학과별 재학생 안전교육(학사지원처-19, 2016.03.04., 학생지원처-154, 2017.03.27.)을 실시하였음</li> <li>· 학과별 행사시 집회승인신청서 제출 시 연대책임 확인서 및 보험, 교통, 숙박에 대한 안전관련 서류를 확인받아서 진행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5.1.1 학생자치활동 및 안전관리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또는 지침)을 갖추고, 시설 및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5.1.1-38, 학사지원처 부서운영계획서(2016)<br/>           Ⅲ-5.1.1-39, 학생지원처 부서운영계획서(2017)<br/>           Ⅲ-5.1.1-40, 학칙<br/>           Ⅲ-5.1.1-41, 총학생회 회칙<br/>           Ⅲ-5.1.1-42, 동아리 운영규정<br/>           Ⅲ-5.1.1-43, 학생회 임원 선거 규정<br/>           Ⅲ-5.1.1-44, 성덕대학교 학생임원 선출지침<br/>           Ⅲ-5.1.1-45, 학과별 대의원 선출 안내 공문(2016, 2017)<br/>           Ⅲ-5.1.1-46, 총학생회장 선거 결과 보고 공문(2016, 2017)<br/>           Ⅲ-5.1.1-47, 총학생회 및 동아리 관련 재정지원 실적 자료(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칙 제57조~제61조, 총학생회 회칙, 동아리 운영규정, 학생회 임원 선거 규정, 학생임원 선출 지침이 있음</li> <li>· 학생자치활동 지원 관련 업무분장으로 학생지원처장 김미원(학생지도 업무 총괄), 학생지원 부처장 김정훈(학생지도 실무 총괄), 학생담당 정다운(학생지도 및 자치활동 지원, 학생선거 관리감독 및 지원, 학생회비 관리, 동아리 관리 및 지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음</li> <li>· 총학생회장 선거는 매년 2학기 총학생회의 자치적인 선거활동에 따라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총학생회장을 선발하였음</li> <li>· 학생자치활동(성덕대체전, 성덕한마당축제, 간담회, 동아리 활동) 재정적 지원으로 2016년 총 4,612천원, 2017년 총 2,338천원을 지원하였음</li> <li>· 총학생회, 대의원회 간부에게 공로 장학금 2015년 회계연도(2016년 공시기준) 총 2,500천원, 2016년 회계연도(2017년 공시기준) 총 3,900천원을 지원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5.1.1 학생자치활동 및 안전관리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의 언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지침)등의 체제를 갖추고, 시설 및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5.1.1-48, 교육방송국 운영 규정<br/>Ⅲ-5.1.1-49, 교육방송국 운영 계획서(2016, 2017)<br/>Ⅲ-5.1.1-50, 교육방송국 방송일지(2016, 2017)<br/>Ⅲ-5.1.1-51, 교육방송국 재정지원 실적 자료(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방송국(SDBS)은 학생언론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충효관 3층 312호에 위치해 있음</li> <li>· 교육방송국(SDBS)은 교내방송(월~목, 낮 12:30 ~ 낮 1시) 시 언론활동 기록을 위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였음(2016-1학기, 2학기 / 2017-1학기, 2학기)</li> <li>· 교육방송국 운영을 위한 음원 구매(학사지원처-879, 2016.05.12. 외 총 3건, 학생지원처-627, 2017.06.23. 외 총 4건) 총 139천원을 지원하였음</li> <li>· 기타 교육방송국 운영을 위한 비품(물티슈, 빗자루, 간식 등 구매) 총 217천원을 지원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5.1.2 학생 상담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의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상담 정책이나 제도와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5.1.2-1,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br/>           Ⅲ-5.1.2-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br/>           Ⅲ-5.1.2-3,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5.1.2-4, 학생상담센터 부서운영계획서(2016, 2017)<br/>           Ⅲ-5.1.2-5, 학생상담센터 행정업무편람<br/>           Ⅲ-5.1.2-6, 학생상담센터 개인상담 신청서(2016)<br/>           Ⅲ-5.1.2-7, 학생상담센터 개인상담 일지(2016)<br/>           Ⅲ-5.1.2-8,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간표<br/>           Ⅲ-5.1.2-9, 집단상담 관련 공문(2016, 2017)<br/>           Ⅲ-5.1.2-10, 학생상담센터 운영결과 보고서(2016, 2017)<br/>           Ⅲ-5.1.2-11, 학생상담센터 전문상담인력 자격입증 자료<br/>           Ⅲ-5.1.2-12, 학생상담센터 전문상담인력 이력서<br/>           Ⅲ-5.1.2-13, 전문상담인력 재교육 관련 공문(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심리상담 및 진로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음</li> <li>·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심리상담 제공을 위한 학생상담센터를 구축(2012년)하고, 전문상담교수(7명), 전문상담직원(1명)을 두고 운영하였음</li> <li>·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에 전문상담교수와 전문상담직원에 대한 자격 규정을 명시하였음(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 2항, 제8조 2항)</li> <li>·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전문자격(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보유)을 갖춘 전문상담직원(성민기)이 전일(상주)근무하였음</li> <li>· 상담 및 심리학 박사학위를 갖춘 교수를 심리(4명)와 진로(3명)분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하고, 주기적인 재교육을 통해 진로·심리 상담역량을 고도화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5.1.2 학생 상담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의 학습 및 진로지도, 대학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b>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b> | <p>Ⅲ-5.1.2-14, 생애진로검사 관련 공문(2016, 2017)</p> <p>Ⅲ-5.1.2-15, STRONG검사 관련 공문(2016, 2017)</p> <p>Ⅲ-5.1.2-16, 다면적진로탐색검사 관련 공문(2017)</p> <p>Ⅲ-5.1.2-17, 진로사고검사 관련 공문(2017)</p> <p>Ⅲ-5.1.2-18, MBTI검사 관련 공문(2016, 2017)</p> <p>Ⅲ-5.1.2-19, TCI검사 관련 공문(2016)</p> <p>Ⅲ-5.1.2-20, 에니어그램검사 관련 공문(2016)</p> <p>Ⅲ-5.1.2-21, 집단상담 프로그램 관련 홈페이지 공지 캡처 자료</p> <p>Ⅲ-5.1.2-22,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요청 공문</p> <p>Ⅲ-5.1.2-23, 장학금 신청 관련 홈페이지 공지 캡처 자료</p> <p>Ⅲ-5.1.2-24, 학생상담 서비스 인지도 향상을 위한 리플렛 제작 요청 공문(2016, 2017)</p> <p>Ⅲ-5.1.2-25, 취·창업지원센터 홍보 리플렛 제작 요청 공문</p> <p>Ⅲ-5.1.2-26, 교수학습지원센터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홍보 리플렛 제작 요청 공문</p> <p>Ⅲ-5.1.2-27, 학생상담센터 학생이력관리시스템 상담예약 매뉴얼 제작요청 공문</p> <p>Ⅲ-5.1.2-28, 홈페이지 사이버학생상담센터 캡처 자료</p> <p>Ⅲ-5.1.2-29,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매 관련 자료</p> <p>Ⅲ-5.1.2-30, 학생이력관리시스템 상담실적 결과 캡처 자료</p> <p>Ⅲ-5.1.2-31, 학생지원처 학생생활상담 관련 자료(2016, 2017)</p> <p>Ⅲ-5.1.2-32,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지원 결과보고 공문(2016, 2017)</p> <p>Ⅲ-5.1.2-33, 학생상담센터 마음의 소리함 설치 사진</p> <p>Ⅲ-5.1.2-34, 학생상담센터 운영 프로그램 안내게시판 사진</p> |

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

- 학교 홈페이지(www.sdc.ac.kr)에 학사일정, 장학정보, 상담정보, 취업정보, 공지사항, 주요일정 등 정보를 제공하였음
- 학생이력관리시스템(ulm.sdc.ac.kr)에 이력, 취·창업정보, 현장실습, 진단, 개인상담, 커뮤니티 등 통합적으로 학업 및 진로, 경력에 대한 정보 열람 및 관리에 지원하였음(학생이력관리시스템 개발: 2017년 2월 구축완료, 총 예산 95,150천원 투입, 산학협력처-245, 2016.05.12.)
- 학생맞춤형 지도를 위하여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진로검사(2016년 총 3건, 2017년 총 6건) 및 심리검사(2016년 총 3건, 2017년 총 2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과별 지도교수에게 제공하여,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 학생생활 관련 지도교수 상담제(학기당 4회 이상)를 운영하였음
- 학기별 지도교수 총 상담건수:
  - 2016년 1학기 총 4,224회, 2016년 2학기 총 4,924회(학사지원처-375, 2016.03.26., 학생지원처-1452, 2016.08.09.)
  - 2017년 1학기 총 5,452회, 2017년 2학기 총 5,710회(학생지원처-155, 2017.03.27., 학생지원처-924, 2017.09.06.)

평가요소: 5.1.3 도서관 지원

진단항목: 도서관은 대학 구성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정(또는 지침) 등 운영체제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5.1.3-1, 학술정보센터 규정<br/>Ⅲ-5.1.3-2, 사서 자격증 사본<br/>Ⅲ-5.1.3-3, 학술정보센터 운영계획서(업무 분장표)</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정보센터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계획서 상 업무분장(센터장: 부서총괄, 사서: 수서, 정리, 대출, 반납, 참고봉사, 학술정보교류)을 하여 운영하였음</li> <li>· 학술정보센터장(손병길), 사서 1명(김현정, 2급 정사서 자격증 보유)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5.1.3 도서관 지원

□ 진단항목: 도서관은 도서관 운영계획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5.1.3-4, 학술정보센터 운영계획서(2015, 2016)<br/>           Ⅲ-5.1.3-5, 학술정보센터 운영 결과(2015, 2016)<br/>           Ⅲ-5.1.3-6, 학술정보센터 규정 제8장 서비스 평가 및 개선<br/>           Ⅲ-5.1.3-7,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료(2015, 2016)<br/>           Ⅲ-5.1.3-8, 개선 실적 자료(2015, 2016)</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정보센터 연간 운영 계획(학술정보센터-80, 2015.02.25., 학술정보센터-160, 2016.02.25.)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음</li> <li>· 학술정보센터 규정에 의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학술정보센터-120, 2015.10.15., 학술정보센터-171, 2016.10.24.)하여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음</li> <li>· 평가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2015년, 2016년 총 35,852천원을 지원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국가고시 도서 서가 운영, 자료실 환경 개선, 자유열람실 환경 개선 (총 29,808천원 지원)</li> <li>- 2016년: 자료실 환경 개선, 아동전문자료실 환경 개선, 복사기 프린트기 임대 (총 4,044천원 지원)</li> </ul> </li> </ul> |



평가요소: 5.1.3 도서관 지원

진단항목: 도서관은 도서관의 안정된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5.1.3-1, 13-가. 장서보유 및 도서관 예산현황</p> <p>Ⅲ-5.1.3-9, 교비회계 결산서 상 학술정보센터 자료구입비 자료(2015, 2016)</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구입비 집행금액: 2015년 35,950천원, 2016년 34,845천원</li> <li>·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2015년 26,512원 (자료구입비 총 35,950,960원 / 2015년 4월 1일자 재학생수 1,356명)</li> <li style="padding-left: 100px;">2016년 25,546원 (자료구입비 총 34,845,210원 / 2016년 4월 1일자 재학생수 1,364명)</li> </ul> |

□ 평가요소: 5.2.1 복지 지원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이나 제도 및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5.2.1-1,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2016, 2017)<br/>           Ⅲ-5.2.1-2,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5.2.1-3, 총학생회 간담회 회의록(2016, 2017)<br/>           Ⅲ-5.2.1-4, 학생서비스 개선 실적 자료(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복지 주무 부서로 학생지원처를 두고, 지원 부서로 행정지원처, 학생상담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술정보센터, 취·창업지원센터, 보건실을 두고 있음</li> <li>· 학생지원처 내 학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학생지원처장 김미원, 부처장 김정훈, 학생담당 정다운으로 구성하였음</li> <li>·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2016.04.25.~05.31., 10.03.~10.30, 2017.04.10.~05.10, 11.20.~2018.02.05), 총학생회 간담회(2016.04.08. 외 총 2회) 등을 통해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였음</li> <li>· 학생지원처 부서운영계획서(2016, 2017)에 개선 결과를 반영하였음</li> <li>· 재학생 요구에 따른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성덕한마당 축제 지원(778천원), 성덕대체전(154천원), 기숙사 난방유 지원(416천원), 국가고시반 간식 지원(875천원)</li> <li style="padding-left: 20px;">기숙사 수질개선(13,495천원), 기숙사 구급약품 지원(24천원), 학생증 발급용품 지원(1,295천원), 재학생 상해보험지원(3,350천원)</li> <li>- 2017년: 성덕한마당 축제 지원(340천원), 성덕대체전(105천원), 총학생회 기념품 배부사업 중식 지원(169천원), 기숙사 난방유 지원(382천원), 전자도서관 구축 및 도서 구매(16,650천원), 강의실 유지·보수(49,400천원), 기숙사 유지·보수(1,129천원), 화장실 개선(91,000천원), 학생증 발급용품 지원(550천원), 재학생 상해보험 지원(3,304천원), 기말고사 간식 이벤트(557천원)</li> </ul> </li> </ul> |

□ 평가요소: 5.2.1 복지 지원

□ 진단항목: 대학은 구성원의 건강한 대학 생활을 위하여 보건실에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5.2.1-5, 보건실 운영 규정<br/>Ⅲ-5.2.1-6, 보건실 전문 인력 자격증<br/>Ⅲ-5.2.1-7, 보건실 운영 관련 자료</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해 보건실 운영규정을 두었음</li> <li>· 2015.08.12. 보건실 운영을 위하여 간호사 자격 보유자인 천세정(2015.08~2016.01)를 채용하였음</li> <li>· 2015.08.24.~2018.02.28. 보건학 학위 소지자 교원을 보건실장(배명수)으로 임명하여 보건실을 운영하였음</li> <li>· 간호조무사 자격을 지닌 교원(최영희), 직원(홍성기)을 함께 배치하였음</li> <li>· 2018.03.12.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 김연희(2018.03~2018.11)를 배치하고, 정규직원으로 근무함</li> </ul> |

□ 평가요소: 5.2.1 복지 지원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5.2.1-8, 학칙<br/>           Ⅲ-5.2.1-9, 장학금 지급 규정<br/>           Ⅲ-5.2.1-10, 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br/>           Ⅲ-5.2.1-11, 교비회계 결산서(2016, 2017)<br/>           Ⅲ-5.2.1-12, 교원 업적평가 규정<br/>           Ⅲ-5.2.1-13, 외부 장학금 기부 증서(2016, 2017)<br/>           Ⅲ-5.2.1-14, 교내장학금 지급 관련 공문(2015, 2016)</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 및 학과별 산학협력을 통한 외부 장학금 유치, 총장 및 교직원의 개인 장학금 기부를 통해 다양한 장학금을 유치하였음</li> <li>· 교원의 업적평가 시 외부장학금 유치 실적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하였음</li> <li>· 외부 장학금 유치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주)다비치안경체인 기부금 외 총 2건, 총 5,000천원</li> <li>- 2017년: (주)드림파이브 기부금 외 총 7건, 총 8,016천원</li> </ul> </li> </ul> |

평가요소: 5.2.1 복지 지원

진단항목: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적당한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 | Ⅲ-5.2.1-1, 12-다. 장학금 수혜 현황  |
| 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 | · 장학금 지급률<br>- 2015년 회계연도(2016년 공시기준): 장학금 총 2,363,998,693원, 등록금 수입 총 6,695,720,100원 ⇒ 35.3%<br>- 2016년 회계연도(2017년 공시기준): 장학금 총 2,266,606,400원, 등록금 수입 총 6,798,143,450원 ⇒ 33.3% |

□ 평가요소: 5.2.2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 지원

□ 진단항목: 대학은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5.2.2-1, 학칙<br/>           Ⅲ-5.2.2-2, 장애학생 지원 규정<br/>           Ⅲ-5.2.2-3,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br/>           Ⅲ-5.2.2-4, 다문화 가족학생 지원 규정<br/>           Ⅲ-5.2.2-5,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자료(2016, 2017)<br/>           Ⅲ-5.2.2-6, 외국인학생 장학금 지급 관련 자료(2016, 2017)<br/>           Ⅲ-5.2.2-7, 장애학생 현황 파악 관련 공문(2016, 2017)<br/>           Ⅲ-5.2.2-8, 장애학생 현황 관련 홈페이지 캡처<br/>           Ⅲ-5.2.2-9, 외국인학생 상담프로그램 관련 공문(2017)</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학칙 제61조의 2(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장애학생 지원 규정, 다문화 가족학생 지원 규정을 두었음</li> <li>· 학생지원처를 장애학생 지원 부서로 지정하고 운영하였음</li> <li>· 재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생: 학생지원과-2079, 2016.11.05., 학생지원처-1114, 2017.10.24.</li> <li>- 교직원: 학생지원과-2079, 2016.11.05., 기획과-100, 2017.03.31.</li> </ul> </li> <li>· 외국인 학생에게 교내 장학금을 지급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회계연도(2016년 공시기준): 총 3,874천원</li> <li>- 2016년 회계연도(2017년 공시기준): 총 3,874천원</li> </ul> </li> <li>· 학생상담센터에서 안정적인 학업 적응을 위한 외국인 학생 생활상담을 실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상담센터-243, 2017.12.05.</li> <li>- 총 6명(베트남 3명, 우즈베키스탄 3명)</li> </ul> </li> </ul> |

## 기준 6. 교직원

평가요소: 6.1.1 전임교원 인사관리

진단항목: 대학은 전임교원의 심규임용, 재임용, 승진, 해임 등 임용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규정이나 지침을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6.1.1-1, 학교법인 윤정학원 정관<br/>           Ⅲ-6.1.1-2, 교원인사 규정<br/>           Ⅲ-6.1.1-3, 교원인사위원회 규정<br/>           Ⅲ-6.1.1-4, 교원재임용 규정<br/>           Ⅲ-6.1.1-5,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br/>           Ⅲ-6.1.1-6, 교원업적평가 규정<br/>           Ⅲ-6.1.1-7,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위원회규정<br/>           Ⅲ-6.1.1-8, 교직원 징계양정 규정<br/>           Ⅲ-6.1.1-9,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br/>           Ⅲ-6.1.1-10, 성덕대학교 규정 홈페이지 공개 현황 캡처<br/>           Ⅲ-6.1.1-11, 직급별 교원 현황(2016, 2017)<br/>           Ⅲ-6.1.1-12, 연도별 승진 현황(2016, 2017)<br/>           Ⅲ-6.1.1-13, 재임용 및 해임 현황(2016, 2017)<br/>           Ⅲ-6.1.1-14, 직급별 교원현황(2016, 2017)<br/>           Ⅲ-6.1.1-15, 교원 신규 임용 관련 철(2016, 2017)<br/>           Ⅲ-6.1.1-16, 교원 재임용 관련 철(2016, 2017)<br/>           Ⅲ-6.1.1-17, 교원 승진임용 관련 철(2016, 2017)<br/>           Ⅲ-6.1.1-18, 교원 업적평가 관련 철(2016, 2017)</p> |



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

- 학교법인 윤정학원 정관, 교원인사 규정,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교원재임용 규정,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위원회규정, 교직원 징계양정 규정을 갖추
- 규정을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구성원 뿐 아니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하였음(<http://www.sdc.ac.kr/file/2.pdf>)
- 신규임용의 절차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의 초빙 공고 후 공개심사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2016.02.22., 2017.02.06)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2016.02.23., 2017.02.08.)을 통해 임용하였음
  - 2016학년도 신규임용 : 10명, 2017학년도 신규임용 : 6명
-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을 위해서는 교원재임용 규정 제11조(재임용기준)에 의거 임용기간 동안의 교원업적평가 평균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충족해야 함
- 재임용 절차는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기획실-802, 2015.10.31., 기획실-770, 2016.10.28.)한 후 해당 교원이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2015.12.28., 2016.12.26)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2015.12.30., 2016.12.27.)을 받아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였음
  - 2016학년도 재임용 : 33명, 2017학년도 재임용 : 15명
- 교원이 차상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원인사 규정 제8조(연구실적 심사기준) 및 제17조(승진)에 의거 승진 소요연한, 업적평가 결과(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활동, 학생지도),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해야함
- 승진 임용 절차는 해당 교원의 승진심사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2016.02.22., 2017.02.06)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2016.02.23., 2017.02.08.)을 받아 임용하였음
  - 2016학년도 승진(부교수) : 1명, 2017학년도 승진(부교수) : 1명
- 교원의 해임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학교법인윤정학원 정관 제4관(징계 및 교원징계위원회)과 교직원 징계양정 규정에 의거 교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징계 처분함
  - 2016학년도, 2017학년도 해임 : 없음

□ 평가요소: 6.1.1 전임교원 인사관리

□ 진단항목: 전임교원 신규 채용시 학문적, 실무적 자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외부심사위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6.1.1-19, 교원 신규임용 심사 서류(2016, 2017)<br/>Ⅲ-6.1.1-20, 외부 심사위원 추천 관련 공문(2016, 2017)<br/>Ⅲ-6.1.1-21, 심사위원 위촉장 사본(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기초, 전공, 면접의 3단계로 진행하며, 학위, 전공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교육 경력, 연구경력, 산업체경력 등을 심사하여 임용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임용 기초 심사표 구성 : 학위별 전공 일치 여부</li> <li>- 교원 임용 전공 심사표 구성 : 학위취득, 강의경력, 근무경력, 논문 및 연수</li> <li>- 교원 임용 면접 심사표 구성 : 기본자질, 외국어 및 컴퓨터 활용능력, 학과발전계획, 학생지도 능력, 취업 및 산학협동, 봉사 및 공헌실적</li> </ul> </li> <li>· 신규임용 심사 시 전체 대학에 외부 심사위원 후보자 추천요청 공문을 시행(기획실-1096, 2016.01.12., 기획실-1048, 2017.01.11.)하여 추천받고 있으며,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학년도 외부 심사위원 구성비 33%(영남대학교 정O, 대구사이버대학교 김OO, 대경대학교 윤OO)</li> <li>- 2017학년도 외부 심사위원 구성비 36%(대구사이버대학교 김OO, 부산경상대학교 장OO, 영진사이버대학 최OO, 포항대학교 배OO)</li> </ul> </li> </ul> |

□ 평가요소: 6.1.1 전임교원 인사관리

□ 진단항목: 교원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6.1.1-22, 교원인사위원회 규정<br/>           Ⅲ-6.1.1-23,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위원회 규정<br/>           Ⅲ-6.1.1-24,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공문(2016, 2017)<br/>           Ⅲ-6.1.1-25,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공문(2016, 2017)<br/>           Ⅲ-6.1.1-26,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구성)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는 5인 내지 7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보직 여부, 소속계열, 직급, 성별을 안배하여 위촉하였음(기획실-51, 2016.03.11., 기획실-634, 2016.09.21., 기획과-59, 2017.03.15., 기획과-535, 2017.0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학년도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 보직:비보직 = 1:4, 자연계열:인문계열=2:3, 부교수:조교수=1:4, 남:여=3:2</li> <li>- 2017학년도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 보직:비보직 = 2:3, 자연계열:인문계열=2:3, 부교수:조교수=2:3, 남:여=1:4</li> </ul> </li> <li>·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위원회는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위원회규정 제2조(구성과 임기)에 따라 기획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보직여부, 소속계열, 직급, 성별을 안배하여 위촉하였음(기획실-51, 2016.03.11., 기획과-59, 2017.0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학년도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구성 : 보직:비보직 = 1:4, 자연계열:인문계열=2:3, 부교수:조교수=2:3, 남:여=2:3</li> <li>- 2017학년도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구성 : 보직:비보직 = 1:4, 자연계열:인문계열=2:3, 부교수:조교수=1:4, 남:여=2:3</li> </ul> </li> </ul> |

□ 평가요소: 6.1.1 전임교원 인사관리

□ 진단항목: 대학은 합리적인 교원평가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갖추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6.1.1-27, 교원업적평가 규정<br/>           Ⅲ-6.1.1-28, 교원인사 규정<br/>           Ⅲ-6.1.1-29, 교원재임용 규정<br/>           Ⅲ-6.1.1-30, 교원업적평가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6.1.1-31, 교원 업적평가 절차 서류(2016, 2017)<br/>           Ⅲ-6.1.1-32, 재임용 관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6.1.1-33, 승진 관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6.1.1-34, 업적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공문(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합리적인 교원평가 실시와 교원평가 결과를 승진, 재임용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 규정, 교원 인사규정을 갖추</li> <li>· 매년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는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의거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의 업적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심의(2016.11.28., 2017.11.22.)를 거쳐 개별 통지(기획실-873, 2016.11.29., 기획과-751, 2017.11.22.)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li> <li>·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1조(업적평가 결과 활용), 교원인사 규정 제17조(승진) 및 교원재임용 규정 제11조(재임용기준)에 의거 전임교원 재임용(교원인사위원회 심의 2015.12.28., 2016.12.26) 및 승진(교원인사위원회 심의 2016.02.22., 2017.02.06)에 활용하였음</li> <li>· 대학은 교원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교원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음(기획실-1151, 2017.02.14., 기획과-833, 2017.12.14.)</li> </ul> |

평가요소: 6.1.1 전임교원 인사관리

진단항목: 교원평가 시 직업교육 관련 활동(실습지도, 취업지도, 기술개발, 산학협력 등)이 반영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6.1.1-35, 교원업적평가 규정<br/>Ⅲ-6.1.1-36, 교원업적평가 실시 관련 공문(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4조(연구산학업적), 제15조(학생지도업적)에 의거하여 직업교육 관련 활동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li> <li>· 국내·외 산학협력 활동, 창업, 기술지도 및 산업체자문 등의 산학협력 실적과 취업지도, 실습지도 등 학생지도 실적 부문을 포함하여 교원 업적평가 시 직업교육 관련 활동을 반영하였음(기획실-697, 2016.10.11., 기획과-618, 2017.10.16.)</li> <li>· 교원 업적 평가 직업교육 관련 활동 배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행사 참석지도(실습지도) : 10%</li> <li>- 취업지도 : 8%</li> <li>- 산학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등) : 8%</li> </ul> </li> </ul> |

평가요소: 6.1.2 교원의 확보

진단항목: 대학은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한 학문적, 실무적 자질을 갖춘 전임교원을 적정수준 이상 확보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 | Ⅲ-6.1.2-1, 6-나-(1).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
| 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 | ·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6학년도 65.57%(편제정원 기준), 2017학년도 67.24%(재학생 기준)로 전임교원을 적정수준 이상 확보하였음 |

평가요소: 6.1.3 비전임교원의 적합성

진단항목: 강사를 비롯한 비전임 교원의 채용 규정이나 지침을 갖추어 준수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6.1.3-1, 겸임·초빙교원에 관한 규정<br/>           Ⅲ-6.1.3-2, 겸임교원 신규 임용 관련 철(2016, 2017)<br/>           Ⅲ-6.1.3-3, 겸임교원 초빙 공고 공문(2016, 2017)<br/>           Ⅲ-6.1.3-4, 겸임교원 재임용 관련 철(2016, 2017)<br/>           Ⅲ-6.1.3-5,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6.1.3-6, 겸임교원 임용 제청 공문(2016, 2017)<br/>           Ⅲ-6.1.3-7, 법인 이사회 회의록(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임 교원 임용을 위하여 겸임·초빙교원에 관한 규정을 갖추</li> <li>· 겸임·초빙교원에 관한 규정 제3조(임용자격)에 근거하여 자격기준을 공고문을 통해 공시(기획실-1086, 2016.01.11., 기획실-1008, 2017.01.03.)하고 학력, 전공, 산업체경력 등 심사를 통해 적합성을 평가하였음</li> <li>· 겸임·초빙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2016.02.22., 2017.02.06)를 받아 총장 제청(기획실-1263, 2016.02.22., 기획실-1133, 2017.02.06.)으로 이사회 의결(2016.02.23., 2017.02.08.)하여 임용하였음</li> </ul> |

평가요소: 6.1.4 연구

진단항목: 교원의 연구실적은 적정한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 | Ⅲ-6.1.4-1, 7-가.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2016, 2017)<br>Ⅲ-6.1.4-2,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2016, 2017)<br><br>Ⅲ-6.1.4-1, 전임교원 연구실적 산정표(2016, 2017)<br>Ⅲ-6.1.4-2,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관련 공문(2016, 2017)<br>Ⅲ-6.1.4-3, 교원연구 활동 조사철(2016, 2017) |
| 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 | · 전임교원의 1인당 연구실적은 대학정보공시 기준 2015년 0.492건(2016년 8월 공시), 2016년 0.315건(2017년 8월 공시)임   |



□ 평가요소: 6.1.4 연구

□ 진단항목: 대학은 연구(창작 및 기술개발 포함)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된 규정이나 지침을 보유, 지원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6.1.4-3,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p> <p>Ⅲ-6.1.4-4, 연구비 규정</p> <p>Ⅲ-6.1.4-5, 교내연구비관리규정</p> <p>Ⅲ-6.1.4-6, 교원업적평가 규정</p> <p>Ⅲ-6.1.4-7, 교외 연구 활동지원 관련 철(2016, 2017)</p> <p>Ⅲ-6.1.4-8, 교내 연구 활동지원 관련 철(2016, 2017)</p> <p>Ⅲ-6.1.4-9, 연구수행 성과에 대한 보상 지급 공문(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연구 촉진을 위해 연구비 규정, 교내연구비관리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을 갖춤</li> <li>· 대학은 교원의 연구 활동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교외 연구비 40,000천원 : 말산업학부 강OO 교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재활 승마의 전용마 생산·조련·인증제 도입 및 실증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1차년도)</li> <li>- 2016년 교내 연구비 11명 3,300천원 : 2017학년도 NCS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연구비 지급 외 2건</li> <li>- 2017년 교외 연구비 47,000천원 : 말산업학부 강OO 교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재활 승마의 전용마 생산·조련·인증제 도입 및 실증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2차 년도), 유아교육과 한OO 교수, 한국연구재단 시각강사연구지원사업 「어머니의 놀이신념에 나타난 부모 역할의 특성 분석」</li> <li>- 2017년 교내 연구비 16명 18,000천원 : 2017학년도 교원연구 활동지원(논문게재 및 저서출판 연구비) 외 2건</li> </ul> </li> <li>· 교원의 연구수행 성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음(기획실-1150, 2017.02.14., 기획과-1087, 2018.02.27.)</li> </ul> |

□ 평가요소: 6.1.5 교원역량개발

□ 진단항목: 대학은 16주 이상의 연구년(연구학기)이나 산업체 연수학기 또는 교환교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교원 역량개발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6.1.5-1, 교원 산업체연수 규정<br/>           Ⅲ-6.1.5-2,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br/>           Ⅲ-6.1.5-3, 교원 산업체연수 시행자료(2016, 2017)<br/>           Ⅲ-6.1.5-4, 교원 인사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6.1.5-5, 산업체연수 대상교원 급여지급명세서(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임교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교원 산업체연수 규정,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을 갖추</li> <li>·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산업체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은 연수 신청 기간 내 지원가능하며, 접수된 연수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2016.02.16., 2017.12.13.)를 거쳐 최종 연수 대상자로 선발하였음(기획실-1244, 2016.02.18., 기획과-834, 2017.12.14.)</li> <li>· 대학은 매년 1명 교원 산업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원 산업체연수 규정 제7조(대우)에 의해 연구기간 중 보수전액을 지급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안경광학과 권OO 교수 : 안경공간(2016.03.02.~2016.08.31.)</li> <li>- 2017년 안경광학과 박OO 교수 : 에이스 보청기 부산점(2017.12.20.~2018.04.20.)</li> </ul> </li> </ul> |

□ 평가요소: 6.1.5 교원역량계발

□ 진단항목: 대학은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의 역량 계발을 위하여 전공교육, 직업교육, 교수학습연수 등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6.1.5-6, 교직원 복지 및 직무역량 계발 지원 규정<br/>           Ⅲ-6.1.5-7, 교원 교내 연수프로그램 운영 자료(2016, 2017)<br/>           Ⅲ-6.1.5-8, 교원 교외 연수 출장여비 지급 서류(2016, 2017)<br/>           Ⅲ-6.1.5-9, 연수 출장복명서(2016, 2017)<br/>           Ⅲ-6.1.5-10, 교원 자기계발비 지급 공문(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의 역량 계발을 위하여 전공교육, 직업교육 관련 단기연수프로그램 운영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전공교육 11건 :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동계학술대회 외</li> <li>- 2016년 교수학습연수 15건 :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의 이해와 사례과정 교육 외</li> <li>- 2016년 직업교육 31건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특강 외</li> <li>- 2017년 전공교육 11건 : 한국마사회 렛츠런 승마힐링센터 세미나 외</li> <li>- 2017년 교수학습연수 21건 : 한양 MOOC 심포지움 MOOC TA SCHOOL 외</li> <li>- 2017년 직업교육 52건 : 전국대학 진로취업교육 포럼 외</li> </ul> </li> <li>· 매년 2회 교원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학년도 74,00천원(기획실-359, 2016.06.09., 기획실-1089, 2017.01.24.), 2017학년도 7,500천원(기획과-421, 2017.08.02., 기획과-935, 2018.01.08)을 지급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6.2.1 직원 인사관리

□ 진단항목: 대학은 직원의 임용(채용, 승진, 인사평가 및 보상, 해임 등)과 관련된 인사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6.2.1-1, 학교법인 윤정학원 정관<br/>           Ⅲ-6.2.1-2, 직원인사 규정<br/>           Ⅲ-6.2.1-3, 취업규칙<br/>           Ⅲ-6.2.1-4, 직원인사위원회 운영 규정<br/>           Ⅲ-6.2.1-5, 사무분장 규정<br/>           Ⅲ-6.2.1-6, 교직원 징계양정 규정<br/>           Ⅲ-6.2.1-7, 직원 징계위원회 규정<br/>           Ⅲ-6.2.1-8, 업무 분장표(2016, 2017)<br/>           Ⅲ-6.2.1-9, 부서별 직원명부(2016, 2017)<br/>           Ⅲ-6.2.1-10, 직원 인사발령 공문 (2016, 2017)<br/>           Ⅲ-6.2.1-11, 신규 직원 채용 관련 공문(2016, 2017)<br/>           Ⅲ-6.2.1-12, 직원 임용(정규직) 관련 공문(2016, 2017)<br/>           Ⅲ-6.2.1-13, 직원 성과평가 관련 공문(2016, 2017)<br/>           Ⅲ-6.2.1-14 직원 승급 관련 공문(2017)<br/>           Ⅲ-6.2.1-15, 연봉책정 관련 공문(2017, 2018)</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채용, 업무분장, 인사평가 및 보상, 해임 등과 관련된 인사규정을 갖춤</li> <li>· 신규 직원 채용은 채용공고 후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채용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학년도 직원 신규채용 : 7명, 2017학년도 직원 신규채용 : 11명</li> </ul> </li> <li>· 정규 직원 임용은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 평가를 근거로 신원조사 후 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학년도 정규직 임용 : 2명, 2017학년도 정규직 임용 : 6명</li> </ul> </li> <li>·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부서, 직원 별 업무분장을 하였음</li> <li>· 직원 성과평가를 매년 2월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승급에 반영하고 연봉책정의 근거로 활용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년 직원 성과평가 결과를 승급에 반영하여 9명의 직원 승급되었음(2017.03.01.)</li> <li>-2016년, 2017년 직원 성과평가 등급을 근거로 2017년, 2018년 성과급을 책정하여 개인별 연봉에 반영하였음</li> </ul> </li> <li>· 해임은 직원인사 규정, 교직원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 진행되며, 2016~2017년 해임 직원은 없음</li> </ul> |

□ 평가요소: 6.2.2 직원 역량 계발

□ 진단항목: 대학은 직원의 직무역량 계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갖추고, 준수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6.2.2-1, 교직원 복지 및 직무역량 계발 지원 규정<br/>Ⅲ-6.2.2-2, 직원 교외 연수 출장여비 지급 서류(2016, 2017)<br/>Ⅲ-6.2.2-3, 직원 교내 연수프로그램 운영 자료(2016, 2017)<br/>Ⅲ-6.2.2-4, 직원 자기계발비 지급 공문(2016)</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교직원 복지 및 직무역량 계발 지원 규정에 따라 직원 직무역량 계발을 위한 교외 연수를 지원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학년도 직원 64명 대상 출장여비 8,426천원 지원 : 대학정보공시 운영계획 및 지침연수, 검사대상기기조종자(소방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사립전문대학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외 47건</li> <li>- 2017학년도 직원 59명 대상 출장여비 7,790천원 지원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보수교육, 전문인력전문성(학생상담) 제고를 위한 재교육, 전문대학 진로취업 및 교육역량 강화 워크숍, 사립대학 학교회계해설(초급1차) 외 45건</li> </ul> </li> <li>· 교내 직무 연수는 2016학년도 성희롱예방 교육 외 2건, 2017학년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외 5건 실시하였음</li> <li>· 정기적으로 매년 2회 직원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학년도 4,600천원(기획실-359, 2016.06.09., 기획실-1089, 2017.01.24.), 2017학년도 4,800천원(기획과-421, 2017.08.02., 기획과-935, 2018.01.08.)을 지급하였음</li> <li>· 직원의 다양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바리스타 자격 취득 과정 교육비(기획실-914, 2016.12.14., 기획실-1158, 2017.02.17.)를 지원하였음</li> </ul> |

평가요소: 6.3.1 교직원 처우 및 복지

진단항목: 교원의 급여 수준은 적절한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 | Ⅲ-6.3.1-1, 교비회계 결산서(2015, 2016회계연도)<br>Ⅲ-6.3.1-2, 교원 직급별 연봉 현황표(2015, 2016회계연도)<br>Ⅲ-6.3.1-3, 교원 개인별 연봉 현황표(2015, 2016회계연도)<br>Ⅲ-6.3.1-4, 겸임교원 강사료 관련 자료(2015, 2016회계연도) |
| 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 | · 대학의 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은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26.49%,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27.58%임<br>· 대학의 등록금 대비 교직원 인건비 비율은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41.49%,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42.88%임                              |

평가요소: 6.3.1 교직원 처우 및 복지

진단항목: 직원의 급여는 적절한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 | Ⅲ-6.3.1-5, 교비회계 결산서(2015, 2016회계연도)<br>Ⅲ-6.3.1-6, 직원 직급별 연봉 현황표(2015, 2016회계연도)<br>Ⅲ-6.3.1-7, 직원 개인별 연봉 현황표(2015, 2016회계연도)<br>Ⅲ-6.3.1-8, 임시직 인건비 관련 자료(2015, 2016회계연도) |
| 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 | · 대학의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은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15%,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15.3%임   |

□ 평가요소: 6.3.1 교직원 처우 및 복지

□ 진단항목: 대학은 교원 및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갖추고, 준수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6.3.1-9, 연봉제 급여 규정<br/>           Ⅲ-6.3.1-10, 교직원 복지 및 직무역량 계발 지원 규정<br/>           Ⅲ-6.3.1-11, 교직원 가족수당 지급 공문(2016, 2017)<br/>           Ⅲ-6.3.1-12,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공문(2017)<br/>           Ⅲ-6.3.1-13, 교직원 자기계발비 지급 공문(2016, 2017)<br/>           Ⅲ-6.3.1-14, 교직원 포상 지급 공문(2016, 2017)<br/>           Ⅲ-6.3.1-15, 교직원 식대비 지원 공문(2016, 2017)<br/>           Ⅲ-6.3.1-16, 교직원 상조회 가입 관련 공문(2016, 2017)<br/>           Ⅲ-6.3.1-17, 교직원 가정의 달 식사권 구매 공문(2016, 2017)<br/>           Ⅲ-6.3.1-18, 직원 포항지진피해 위로금 지급 공문(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봉제 급여 규정 제19조(가족수당), 제20조(입시수당 및 근무·기타수당)에 따라 가족수당,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가족수당 5,610천원 : 기획실-597, 2016.09.05., 기획실-1088, 2017.01.24.</li> <li>- 2017년 가족수당 5,790천원 : 기획과-420, 2017.08.02., 기획과-934, 2018.01.08.</li> <li>- 2017년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8,006천원 : 기획과-571, 2017.09.28., 기획과-1084, 2018.02.27.</li> </ul> </li> <li>· 교직원복지및직무역량계발지원규정 제10조(복지의 종류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교직원 자기계발비 지원, 교직원 공로 포상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자기계발비 13,080천원 : 기획실-359, 2016.06.09., 기획실-1089, 2017.01.24.</li> <li>- 2017년 자기계발비 12,300천원 : 기획과-421, 2017.08.02., 기획과-935, 2018.01.08.</li> <li>- 2016년 공로포상 8명 47,000천원 : 기획실-289, 2016.05.23., 기획실-294, 2016.05.24.</li> <li>- 2017년 공로포상 27명 66,000천원 : 기획과-202, 2017.05.15., 기획과-215, 2017.05.19., 기획과-844, 2017.12.20.</li> </ul> </li> <li>· 교직원 식대비로 2016년 16,437천원, 2017년 14,062천원 지원하였으며, 교직원 복지를 위해 상조업체에 가입하여 직계가족 상을 당했을 때 상조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하였음</li> <li>· 2016, 2017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직원 식사권을 구매하여 지급(기획실-205, 2016.04.28., 행정지원처-396, 2017.05.29.)하였으며, 2017년 포항지진피해 직원 위로금을 지급(기획과-809, 2017.12.07.)하였음</li> </ul> |



## 기준 7. 재정 및 시설

□ 평가요소: 7.1.1 연간 예산계획 수립 및 결산

□ 진단항목: 대학의 연간 예산계획은 대학발전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1.1-1, 교비회계 예산서(2016, 2017회계연도)<br/>           Ⅲ-7.1.1-2, 부서별 운영 계획서(2016, 2017)<br/>           Ⅲ-7.1.1-3, 부서별 예산요구서(2016, 2017회계연도)<br/>           Ⅲ-7.1.1-4, 예산확정통보서(2016, 2017회계연도)<br/>           Ⅲ-7.1.1-5, 장·단기 재정운영 계획서<br/>           Ⅲ-7.1.1-6, 성덕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서<br/>           Ⅲ-7.1.1-7, 대학평의원회 회의록<br/>           Ⅲ-7.1.1-8, 이사회 회의록</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p>· 대학은 사명 및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장단기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 수행을 위한 3대 전략과제, 25개 실행과제 설정하였음: 대학평의원회 심의(2016.01.19.), 이사회 의결(2016.02.23.)<br/>           ·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장·단기 재정운영 계획에 따른 수입 및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예산을 수립하였음</p>  |

□ 평가요소: 7.1.1 연간 예산계획 수립 및 결산

□ 진단항목: 연간 예산계획 수립 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1.1-9, 학과 및 부서 예산 요구서(2016, 2017회계연도)<br/>           Ⅲ-7.1.1-10, 부서별 운영 계획서(2016, 2017)<br/>           Ⅲ-7.1.1-11,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7.1.1-12,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7.1.1-13,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2016, 2017)<br/>           Ⅲ-7.1.1-14,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개선 방안 부서운영계획서 반영 요청 공문(2016, 2017)<br/>           Ⅲ-7.1.1-15,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실적 보고 공문(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학과 및 부서의 운영 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요구서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 수립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음</li> <li>· 예산 수립 시 대학평의원회 자문(2015.12.28., 2017.01.23.)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2015.12.29., 2017.01.25.)를 통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평의원회 구성: 교원 4명, 직원 3명, 학생 1명, 외부인사 3명</li> <li>-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교직원 3명, 학생 3명, 전문가 2명</li> </ul> </li> <li>· 대학은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부서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수립 시 개선과제 실행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여 편성함(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위원회-28, 2016.07.05.,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위원회-31, 2017.06.26. 외 2건)</li> </ul> |

□ 평가요소: 7.1.1 연간 예산계획 수립 및 결산

□ 진단항목: 대학은 연간 예산 수립 및 변경, 결산, 공시 등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1.1-1, 8-라. 예·결산(합산재무제표) 현황<br/>           Ⅲ-7.1.1-2, 8-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br/>           Ⅲ-7.1.1-3,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br/>           Ⅲ-7.1.1-4, 8-사. 적립금 현황<br/>           Ⅲ-7.1.1-5, 8-아. 기부금 현황<br/>           Ⅲ-7.1.1-6, 8-차. 등록금 현황<br/>           Ⅲ-7.1.1-7, 9-가. 등록금 산정근거</p> <p>Ⅲ-7.1.1-16, 재무회계 규정<br/>           Ⅲ-7.1.1-17, 교비회계 예산 편성 절차 공문(2016, 2017회계연도)<br/>           Ⅲ-7.1.1-18, 교비회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절차 공문(2016, 2017회계연도)<br/>           Ⅲ-7.1.1-19, 교비회계 결산 절차 공문(2015, 2016회계연도)<br/>           Ⅲ-7.1.1-20,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7.1.1-2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7.1.1-22, 이사회 회의록(2016, 2017)<br/>           Ⅲ-7.1.1-23, 대학 홈페이지 예·결산 공개 캡처</p> |

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

- 대학은 예산회계 관련 법령 및 성덕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11조 내지 제15조에 의거하여 예산편성절차와 일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음
  -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수립: 등록금심의위원회-22, 2015.12.14., 등록금심의위원회-21, 2016.12.14.
  - 학교전출금 등 학교 관계 예산 이사장이 총장에게 통지: 윤정학원-184, 2015.11.13., 윤정학원-189, 2016.11.14.
  - 대학평의원회 자문: 2015.12.28., 2017.01.23.
  -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2015.12.29., 2017.01.25.
  -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 기획실-1032, 2015.12.31., 기획실-1106, 2017.01.26.
  - 이사회에서 예산안 심의·확정: 2016.02.05., 2017.02.08.
  -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비예산 통보: 윤정학원-243, 2016.02.12., 윤정학원-250, 2017.02.09.
  - 확정된 예산을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 및 공시: 윤정학원-248, 2016.02.24., 윤정학원-259, 2017.02.21
- 학교법인은 법인회계 예산서 및 교비회계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2016.02.23., 2017.02.21.)하여 1년 간 공개하였음
- 대학은 확정된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성덕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각 부서에서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
  - 대학평의원회 자문: 2016.04.18.외 3건, 2017.04.17.외 3건
  -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2016.04.19.외 3건, 2017.04.18.외 3건
  - 이사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확정: 2016.04.29.외 3건, 2017.04.27.외 3건
  - 추경예산을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 및 공시: 윤정학원-54, 2016.05.12.외 3건, 윤정학원-49, 2017.05.10.외 3건
- 대학은 예산회계 관련 법령 및 성덕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제47조 내지 제50조에 의거 결산하였음
  - 결산 내부감사: 2016.04.05., 2017.04.03.
  - 결산 외부회계감사: 2016.04.14., 2017.04.11.
  - 대학평의원회 자문: 2016.04.18., 2017.04.17.
  -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2016.04.19., 2017.04.18.
  - 이사회에서 결산 심의·확정: 2016.04.29., 2017.04.27
  - 결산서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 및 공시: 윤정학원-58, 2016.05.30., 윤정학원-61, 2017.05.30
- 대학의 예·결산 현황은 대학홈페이지 및 대학알리미에 공시하였음

□ 평가요소: 7.1.1 연간 예산계획 수립 및 결산

□ 진단항목: 대학은 등록금 산정시, 관련 법규(고등교육법 제11조)와 이월금 및 적립금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책정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1.1-24, 등록금 산정근거 자료(2016, 2017)<br/>Ⅲ-7.1.1-25,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위한 노력으로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규정에 의거 대학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학생교육만족도 향상, 사회·경제적 여건 감안,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등록금 책정하였음</li> <li>· 대학은 최근 사회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등록금심의위원회-5(2015.10.28.), 등록금심의위원회-26(2017.01.19.))을 통하여 등록금을 동결하고 책정된 등록금은 대학홈페이지 및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7.1.1 연간 예산계획 수립 및 결산

□ 진단항목: 대학의 예산 수립과 집행·결산은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운영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1.1-26, 재무회계 규정<br/>Ⅲ-7.1.1-27, 사무분장 규정<br/>Ⅲ-7.1.1-28, 행정 업무 편람</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사무분장 규정 제4조에 의거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통제·배정하며, 동 규정 제5조에 의거 행정지원처에서 결산, 수입·지출 관리, 지출 제반서류 검토 및 증빙자료 징수보완으로 업무가 분장됨</li> <li>· 예산업무는 기획실 실장 배명수, 과장 박민선, 팀장 임나현, 담당 문해숙이 담당하고 있으며, 집행·결산업무는 행정지원처 처장 박만성, 팀장 이은정이 담당하여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운영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7.1.2 재정자원의 다양성

□ 진단항목: 대학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1.2-1, 교비회계 결산서(2015, 2016회계연도)<br/>           Ⅲ-7.1.2-2,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서(2015, 2016회계연도)<br/>           Ⅲ-7.1.2-3, 성덕대학교 재원 확보 계획 공문(2016, 2017)<br/>           Ⅲ-7.1.2-4, 대학발전기금 관리 규정<br/>           Ⅲ-7.1.2-5, 성덕대학교 발전기금 운영 계획서(2016)<br/>           Ⅲ-7.1.2-6, 등록금 카드 납부 제도 시행 관련 공문</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등록금 수입 외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성덕대학교 재원 확보 계획 수립(기획실-938, 2015.12.09., 기획실-1032, 2017.01.06.) 및 대학발전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발전기금 운영 계획 수립(기획실-1196, 2016.02.02.)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li> <li>· 교비회계 재원 확보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회계연도: 등록금 수입 외에 법인전입금, 기부금,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학시설 사용료 수익으로 230,980천원의 재정자원을 확보하였음</li> <li>- 2016회계연도: 등록금 수입 외에 법인전입금, 기부금,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학시설 사용료 수익으로 273,386천원의 재정자원을 확보하였음</li> </ul> </li> <li>· 산학협력단회계 재원 확보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영천시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여성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수익 등으로 2015회계연도 741,770천원, 2016회계연도 340,850천원의 재정자원을 확보하였음</li> </ul> </li> <li>· 대학은 등록금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 분납제도를 시행해왔으며, 등록금 카드납부 제도를 2015학년도 08월부터 시행 하였음</li> <li>·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15회계연도 결산 기준 70.97%, 2016회계연도 결산 기준 70.29%로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지고 있음</li> </ul> |



□ 평가요소: 7.1.2 재정자원의 다양성

□ 진단항목: 기부금, 발전기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 법정부담금 등 법인 전입금이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1.2-1, 8-사. 적립금 현황<br/>Ⅲ-7.1.2-2, 8-아. 기부금 현황<br/>Ⅲ-7.1.2-3,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br/><br/>Ⅲ-7.1.2-7, 교비회계 결산서(2015, 2016회계연도)<br/>Ⅲ-7.1.2-8, 외부 감사보고서(2015, 2016회계연도)</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은 법인 전출금(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포함) 2015회계연도 결산 기준 109,000천원, 2016회계연도 결산 기준 147,215천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였음</li> <li>· 법인에서는 지정기부금을 제외한 일반기부금 2015회계연도 17,200천원, 2016회계연도 85,550천원을 전액 교비회계로 전출하였음</li> <li>· 대학은 법인으로부터 법정부담금 2015회계연도 107,000천원, 2016회계연도 146,392천원을 전입 받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2015회계연도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65.1%(전국 전문대학 평균 23.02%), 2016회계연도 69.3%(전국 전문대학 평균20.57%)로 전국 전문대학 평균 이상을 상회하며 매년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음(2016, 2017년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li> </ul> </li> </ul> |

평가요소: 7.2.1 교육비의 환원

진단항목: 교육비 환원율은 적정한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2.1-1,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br/>           Ⅲ-7.2.1-2, 8-자. 산학협력단회계 현황<br/>           Ⅲ-7.2.1-3,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br/><br/>           Ⅲ-7.2.1-1, 교비회계 결산서(2015, 2016회계연도)<br/>           Ⅲ-7.2.1-2,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서(2015, 2016회계연도)</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2015회계연도 등록금 수입 6,695,720천원, 총교육비 8,411,098.43천원으로 교육비 환원율 125.6%임</li> <li>· 대학은 2016회계연도 등록금 수입 6,798,143천원, 총교육비 8,223,410.73천원으로 교육비 환원율 121.0%임</li> <li>·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00%이상의 교육비를 환원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7.2.2 재정·회계 운영의 적절성

□ 진단항목: 대학의 예산집행은 예산계획에 맞추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2.2-1, 재무회계 규정<br/>Ⅲ-7.2.2-2, 분기별 예·결산 자체 모니터링 관련 자료(2016, 2017)<br/>Ⅲ-7.2.2-3, 중간 결산 관련 자료(2016, 2017)<br/>Ⅲ-7.2.2-4, 추가경정 예산 편성 철(2016, 2017회계연도)</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재무회계 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각 부서에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예산이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자체 통제하였음</li> <li>· 대학은 확정된 예산의 변경 사유 발생 시 각 부서에서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평의원회 자문: 2016.04.18.외 3건, 2017.04.17.외 3건</li> <li>-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2016.04.19.외 3건, 2017.04.18.외 3건</li> <li>- 이사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확정: 2016.04.29.외 3건, 2017.04.27.외 3건</li> <li>- 추경예산을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 및 공시: 윤정학원-54, 2016.05.12.외 3건, 윤정학원-49, 2017.05.10.외 3건</li> </ul> </li> </ul> |

□ 평가요소: 7.2.2 재정·회계 운영의 적절성

□ 진단항목: 대학은 적립금과 이월금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2.2-5, 교비회계 4차 추가경정 예산서(2016, 2017회계연도)<br/>           Ⅲ-7.2.2-6, 교비회계 결산서(2016, 2017회계연도)<br/>           Ⅲ-7.2.2-7,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7.2.2-8, 적립금 사용 현황(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에 근거하여 적립 및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에 보고(윤정학원-58, 2016.05.30., 윤정학원-61, 2017.05.30.)하고 있으며,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음</li> <li>· 대학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근거하여 이월금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잉여금 처리원칙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2015.12.29., 2017.01.25.) 심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 잉여금은 잉여금 처리원칙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개선, 학과 기자재 확충 등 직접교육비에 활용하였음</li> </ul> </li> <li>· 대학의 기타 이월금 현황은 2016년 4.08%, 2017년 1.29%임</li> </ul> |

□ 평가요소: 7.2.2 재정·회계 운영의 적절성

□ 진단항목: 이월금이 있는 경우, 발생 사유가 타당하고 활용계획은 적절한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2.2-9, 교비회계 예산서(2016, 2017회계연도)<br/>Ⅲ-7.2.2-10, 교비회계 결산서(2016, 2017회계연도)<br/>Ⅲ-7.2.2-1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이월금은 결산 시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사립전문대학 이월금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2015.12.29., 2017.01.25.)의 잉여금처리원칙에 의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며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였음</li> <li>· 대학은 2016회계연도 결산 기준 기타이월금은 2012년 토지매각처분 285,757천원이 이월되어 발생하였음</li> <li>· 잉여금 처리원칙 마련에 맞게 2016회계연도 기타이월금을 2017년 등록금회계에서 학생 이력관리 고도화 시스템 구축 88,000천원, 학생 온라인 출결 시스템 도입 15,000천원, 기금적립금 45,000천원으로 활용하였음</li> <li>· 2017회계연도 기타 이월금액 1.29%, 94,392천원임</li> </ul> |

□ 평가요소: 7.2.2 재정·회계 운영의 적절성

□ 진단항목: 대학은 재정원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2.2-12, 분기별 예·결산 자체 모니터링 관련 자료(2016, 2017)<br/>Ⅲ-7.2.2-13, 평가 개선 결과 관련 자료(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은 계정과목별,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대비 집행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매분기별 예산집행실적을 집계 및 점검 후 통지하였음</li> <li>· 감사규정에 따라 재무 상태와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재정 운영의 방향 및 예산편성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보고서 작성하여 보고하였음</li> <li>· 내부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 실시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하여 환류 및 개선하였음</li> <li>· 2016년, 2017년 평가 개선 결과 계정오류 재발방지를 위한 재정관리 개선방향 및 자체교육 실시하였음</li> </ul> |

평가요소: 7.2.3 감사제도

진단항목: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2.3-1, 내부감사 규정<br/>Ⅲ-7.2.3-2, 감사보고서 및 감사증명서(2015, 2016회계연도)</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학교법 제31조 4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 및 내부감사 규정에 의하며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음</li> <li>· 산학협력단회계의 경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7조에 의거 산학협력단 감사를 실시하였음</li> </ul> |

평가요소: 7.2.3 감사제도

진단항목: 대학은 감사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감사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2.3-1,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p> <p>Ⅲ-7.2.3-3, 감사결과 현황(2015, 2016회계연도)</p> <p>Ⅲ-7.2.3-4,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캡처 화면(2015, 2016)</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학교법 제31조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실행하였음</li> <li>· 대학은 내부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시 결산서에 반영할 부분은 바로 결산서에 반영하고 정책적인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완하였음</li> <li>· 대학은 내부감사를 통해 감사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감사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음</li> </ul> |



평가요소 : 7.3.1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진단항목 : 대학은 법정 교사확보율을 준수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 | Ⅲ-7.3.1-1, 14-라. 교사시설 확보 현황   |
| 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 | · 교사확보율<br>- 2016년 기준 면적 12,154㎡, 보유면적 15,991㎡ 131.6%임<br>- 2017년 기준 면적 12,201㎡, 보유면적 15,991㎡ 131.1%임 |

□ 평가요소 : 7.3.1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 진단항목 : 대학은 다양한 복지시설(체육시설, 보건실, 상담실, 복지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 | Ⅲ-7.3.1-1, 교직원 복지 및 직무역량 계발 지원 규정<br>Ⅲ-7.3.1-2, 복지시설 현황  |
| 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직원 복지 및 직무역량 계발 지원 규정이 있음</li><li>· 보건실은 충효관 1층 동편(106호)에 위치하여(개방시간: 09:00~18:00)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운영하였음</li><li>· 학생상담센터는 충효관 2층 서편(222호)에 위치하여(개방시간: 09:00~18:00) 내담자가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통행이 적은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음</li><li>· 체육시설(헬스센터)은 충효관 5층 서편(508호)에 위치하여(개방시간: 09:00~18:00) 운영하였음</li></ul> |

□ 평가요소 : 7.3.1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 진단항목 : 대학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적절히 설치·운영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7.3.1-3, 장애학생 지원 규정<br/>           Ⅲ-7.3.1-4,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현황<br/>           Ⅲ-7.3.1-5,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실적 자료</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학생 지원 규정이 있음</li> <li>· 장애인 편의시설로 승강기(충효관 동편), 휠체어경사로(충효관 1층 중앙로비), 점자블록(충효관 동·서편 출입구), 장애인 화장실(충효관 1층 서편, 5층 동편), (창의관 2층 서편), (재활승마장 1층), 장애인 전용주차장(충효관 서편) (창의관 서편), (운동장), (재활승마장), 청각장애인 시각경보장치(충효관 동·서편)설치하였음</li> <li>·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2017년 장애인 전용주차장 도색 작업)를 실시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 7.3.1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 진단항목 : 대학은 교육 및 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유지, 개성을 위한 규정(또는 지침)을 갖추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3.1-6, 시설물 관리 규정<br/>           Ⅲ-7.3.1-7, 시설물 관리 대장<br/>           Ⅲ-7.3.1-8, 교육시설 개선 실적 관련 자료(2016, 2017)<br/>           Ⅲ-7.3.1-9, 수요자 만족도 조사(2016, 2017)<br/>           Ⅲ-7.3.1-10, 교육시설 정기점검 관련 자료(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관리 규정이 있음</li> <li>·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시설을 관리 및 유지 개선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69,300천원)<br/>                   강의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23,210천원)<br/>                   강의실 개보수 및 시설보수 공사(180,400천원)</li> <li>- 2017년: 강의실 개보수 및 시설보수 공사(95,200천원)<br/>                   강의실 유지보수 공사(49,400천원)<br/>                   화장실 개보수 공사(91,000천원)</li> </ul> </li> <li>· 교육시설 정기점검(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을 시실 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7.3.2 정보전산시스템 지원 및 운영

□ 진단항목: 대학은 정보전산시스템 지원조직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 근거자료</p> | <p>Ⅲ-7.3.2-1, 학사지원처 부서운영계획서(2016)<br/>           Ⅲ-7.3.2-2, 학생지원처 부서운영계획서(2017)<br/>           Ⅲ-7.3.2-3, 정보보안 규정<br/>           Ⅲ-7.3.2-4, 개인정보 보호관리 규정<br/>           Ⅲ-7.3.2-5, 전산팀 운영 규정<br/>           Ⅲ-7.3.2-6, 정보보안 심사위원회 규정<br/>           Ⅲ-7.3.2-7, 전담인력 학위 및 자격증 관련 자료</p>  |
| <p>대학자체평가 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전산의 안정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학생지원처 내 전산팀을 두고 운영하였음</li> <li>- 2016년: 전담인력 3명(이성형: 전산시스템 개발 및 DB관리, 웹메일 관리 업무 / 사공혁, 이재철: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li> <li>- 2017년: 전담인력 2명(이성형: 전산시스템 개발 및 DB관리, 이재철: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li> <li>· 담당직원은 업무를 위한 전문성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li> <li>- 이성형: 컴퓨터정보공학부, Oracle OCP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자격증</li> <li>- 사공혁: 생산기계공학과, CCNA 자격증, Microsoft System Engineer 자격증</li> <li>- 이재철: 컴퓨터공학과,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Oracle OCP자격증, LPIC-1 자격증</li> </ul> |

□ 평가요소: 7.3.2 정보전산시스템 지원 및 운영

□ 진단항목: 대학은 정보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3.2-8,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2016, 2017)<br/>           Ⅲ-7.3.2-9, 성덕대학교 전산시스템 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2016, 2017)<br/>           Ⅲ-7.3.2-10, 전산작업 의뢰 요청서(2017)<br/>           Ⅲ-7.3.2-11, 전산팀 운영위원회 회의록(2016, 2017)<br/>           Ⅲ-7.3.2-12, 학사지원처 부서운영계획서(2016)<br/>           Ⅲ-7.3.2-13, 학생지원처 부서운영계획서(2017)<br/>           Ⅲ-7.3.2-14, 웹메일시스템 교체 요청 관련 자료<br/>           Ⅲ-7.3.2-15, 전자도서관 구축 관련 자료</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전산 운영을 위하여 성덕대학교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2016, 2017), 성덕대학교 전산시스템 만족도 조사(2016, 2017)를 실시하였음</li> <li>· 전산팀 운영위원회(2016.02, 2017.02)를 통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음</li> <li>· 2017.10. 전산시스템 만족도 조사결과, 교직원들의 웹메일 서비스 개선요구에 따라, 2018.02. 웹메일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였음</li> <li>· 학생간부 소통간담회(2017.12.04.)를 통해서 전자도서관 구축 필요성을 접수받아, 2017년 회계연도 4차 추가경정 시 반영하고, 전자도서관 구축 계약(2018.02.06.)을 체결하였음</li> </ul> |

□ 평가요소: 7.3.3 정보보안 체계

□ 진단항목: 대학은 학생 및 교원, 직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갖추어 준수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3.3-1, 개인정보 보호규정<br/>           Ⅲ-7.3.3-2, 정보보안 규정<br/>           Ⅲ-7.3.3-3,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2016, 2017)<br/>           Ⅲ-7.3.3-4,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집행 서류<br/>           Ⅲ-7.3.3-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진단 정책 자료<br/>           Ⅲ-7.3.3-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진단 결과보고서(2016, 2017)<br/>           Ⅲ-7.3.3-7, 정보보안에 대한 안전관리 입증자료(2016, 2017)</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화벽, DB보안, 개인정보PC필터(개인정보암호화), 웹메일(스팸필터 기능포함), 카스퍼스키 백신, 패치관리시스템(PMS), IP-Keeper(네트워크 접근 제어) 같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음</li> <li>· 매년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진단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04.: 이중보안장치 구비, 휴대폰 촬영금지 스티커 구매</li> <li>- 2017.11.: 노후화된 패치관리시스템(PMS) 교체</li> </ul> </li> </ul> |

□ 평가요소: 7.3.3 정보보안 체계

□ 진단항목: 대학은 행정 관련 정보(학사, 예산 포함)를 화재, 외부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충족여부                   | Y ( ○ ), C (   ), N(   )  |
|------------------------|---|
| <p>대학자체평가<br/>근거자료</p> | <p>Ⅲ-7.3.3-8, 성덕대학교 재해재난 정보시스템 위기 대응 매뉴얼<br/>Ⅲ-7.3.3-9, KT IDC 사용 관련 자료</p>   |
| <p>대학자체평가<br/>판단이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시스템의 재해나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였음</li> <li>· 화재, 천재지변과 외부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매월 단위로 모든 학사DB를 KT IDC센터 내 서버에 백업을 실시하고 있음</li> <li>· KT IDC센터(대구 대명동 소재)내 학사DB, 사이버캠퍼스 LMS 서버, VOD 서버, 홈페이지 서버, 종합정보시스템 서버를 두어서 외부 해킹 방지를 위한 체계를 갖추</li> </ul> |



## 제 III 장.

# 자체평가 활용 계획

## 제 III 장. 자체평가 활용 계획

### 1. 평가결과의 공시 및 공유

#### 평가결과의 공시

-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 홈페이지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에 평가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평가결과의 공유

- 전 구성원이 평가 결과를 공유하여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2. 자체평가 분석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의 공시

- 대학전반에 관한 정보공시 관련 지표 개선을 통한 대내·외적인 대학 경쟁력 강화
- 대학전반에 관한 정보공시 관련 지표 개선을 통한 대내·외적인 대학 경쟁력 강화
-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 실시에 적극적인 활용
- 행정부서 및 학과별 예산 편성 근거로 활용
- 대학의 체계적인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진단에 의한 환류 및 개선 체계를 통하여 선순환 시스템 구축